910.189 8147 4200

가구표본 관리지침서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2009. 3.

B0092103.



통계청 표본관리과

가구표본관리지침서 |

CONTENTS

목 지

1. #2tt=1 3 + mx	
01. 표본관리 목적	2
02. 업무대상	2
03.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	2
04.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3
05. 가계동향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4
II. 2007년 포본얼계 개요	
01. 표본개편 목적	6
02. 표본개편 대상	6
03. 연혁	6
04. 2007년 표본개편 특징	7
05. 표본설계 개요	7
06. 표본개편에 따른 표본관리	10
III. TOTAM	
01. 조사구교체 개요	12
02. 조사구교체 사유	13
03. 조사구교체 절차	15
04. 가구명부 작성요령	20
05. 조사구요도 작성요령	24

30
31
32
46
-
50
53 57
59
39
64
65
67
68
69
74
75
77
82
83
84
85
87
88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표본관리 업무개요



01 표본관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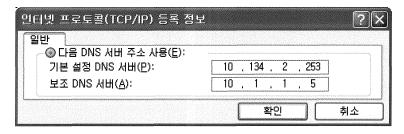
- 표본조사구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구의 전출/전입, 거처의 철거/신축 등을 조속히 반영하여 적정한 표본규모 유지
- 응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계열 생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연동표본제 하에서의 원활한 표본교체를 위함
- ◎ 응답거부 등에 의해 표본크기가 줄어들면 추정치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표준적인 추론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되므로 불응가구에 대해 효과적 관리 필요

02 업무대상

◎ 가구부문 표본조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03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

- ◉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이하 '가구통합시스템')를 통해서도 표본관리업무를 수행
- ㅇ 인터넷 주소 : http://hims.nsi.go.kr
- 사용환경 : 통계청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결가능한 PC에서 아래와 같이 DNS서버 설정



04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표본가구 관리명부

- 매월 준비조사 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사항을 보완 -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입 사항 및 변동내역
- 내검 및 입력마감 : 매월 29~30일

(경활조사표 입력마감일과 동일)

거처변동 내역서 보고 ○ 매월 준비조사 기간 중 조사구역 내의 거처변동(신축· 철거 등) 현황을 5일까지 보고

조사구역 조정요청

- o 과소·과대 조사구 및 과소구역 조사구에 대해 조정 요청
- ㅇ 경활 내검 완료 후 보고
 -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조사구역 조정 승인 및 조사시작

- ㅇ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조정결과를 10일까지 통보
- ㅇ 통보시 정비된 조사구요도 첨부
- ㅇ 해당 승인 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적용

표본조사구 교체 요청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의 교체 요청

- 보고기일 : 매월 20일까지



조사구 교체 승인 및 조사시작

-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해당 교체조사구의 총조사 당시 가구명부 및 요도를 송부(각 1부씩)
- 현지 실사 후 가설정된 가구명부 및 요도를 표본관리과로 송부
- ㅇ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 통보
- ㅇ 해당 승인 표본조사구는 익월 경제활동조사부터 적용

05 가계동향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표본가구 관리명부

- ㅇ 준비조사 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사항을 보완
 -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 · 입 사항 및 변동내역
- 내검 및 입력마감 : 매월 18~19일

(가계부 입력마감일과 동일)

조사구역 조정요청

- 가계동향조사 표본조사구 중 회수율 50%이하이거나 적격 6가구 이하인 조사구를 취합하여 보고
 -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입 사항 및 변동내역
- ㅇ 보고기일 및 방법: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보고

조사구역 조정승인 ○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조사구역 조정 결과를 25일까지 통보



조사 준비 및 개시 조정구역에서 익월부터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대강화 및 가계부 지도 등을 실시 후 익월 조사부터 조사시작(조정 승인 통보 시 명시)

가계가구 대체요청

- 가계동향조사를 3개월 이상 불응할 경우 경활조사 가구중 유사한 가구를 지정하여 대체 승인 요청
 - 매월 20일까지 가구통합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가계가구 대체승인 ○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조사개시월을 명시하여 25일 까지 통보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년 포본얼계 개요



01 표본개편 목적

●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틀을 이용하여 표본의 대 표성 및 정확성 제고

02 표본개편 대상

◉ 매월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03 연 혁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 1957년 '노동력조사'로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 지정통계로 지정
- 1969년 2002년까지 7차례 표본개편
- 1980년 조사항목을 26개로 확대
- 1982년 분기조사에서 월별조사로 변경
- 1983년 ILO 권고안 개편에 따라 조사표 전면 보완
- 1985년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 1988년 조사대상 표본확대(약 17,500→약 32,500가구)
- 1998년 조사표 개편
- 1999년 CAPI 도입
- 2005년 1월 연동표본제 전국 도입
- 2005년 7월 실업통계 작성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하여 1999년 6월 이후 자료 보정

나. 가계동향조사

- 1942년 일제말기 처음 시작
-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 실시
- 1954년 서울 근로자 200가구 유의표본 조사
- 1960년 임의표본으로 전면개편 조사
-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 품목별 분류방식에 의한 조사 실시
- 1969년 2002년까지 8차례 표본개편
- 1975년 전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
- 1982년 가계소비 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개편
- 1995년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으로 확대
- 1977년 1995년 총조사 결과 표본개편, 5,500가구 유지
- 2002년 2000년 총조사 결과 표본개편, 7,500가구로 변경,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5년 연동표본제 도입, 1인가구 조사
- 2008년 '가계동향조사'로 명칭변경

04 2007년 표본개편 특징

- ◉ 다목적 표본의 일부 분리로 응답자 응답 부담경감
- ◎ 소지역 추정기법을 통한 시군구 통계 작성여건 마련
- ◎ 연동표본제 정착으로 응답자 부담경감 및 안정적 시계열 자료 생산
- ◉ 모수추정방법 개선에 따른 통계의 정확성 제고

05 표본설계 개요

가. 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
-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11.1. ~ 2006.10.3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

나, 층화

다. 포본규모

- 경제활동인구조사 : 1,629개 조사구(조사구당 평균 20가구)로 약 32,000가구
- 가계동향조사 : 999개 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로 약 8,700가구

신구 표본규모 현황

	경	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조사구수	총가구수	조사구수	총가구수
구표본	1,629개	약 32,580가구	99971	약 7,300가구
신표본	1,629개	약 32,000가구	999개	약 8,700가구

라. 표본조사구 추출

- 1) 기초자료의 집계
 - 2005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하여,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모집단 특성에 대해 기초자료 집계

2) 특성항목의 선정

- 추출된 표본과 모집단의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특성항목 사용
 - 실업자수 및 취업자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24개 항목 선정

모집단 특성항목

불류	특 성 항 목
주택사항 (4개)	- 주택유형(소형아파트, 대형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가구사항 (5개)	-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농림어가) - 주택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인구사항 (9개)	- 성별(남자, 여자) - 15세 이상 연령그룹별(15-19세, 20-29세, 30-59세, 60세이상) - 교육정도(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경활사항 (6개)	- 경활상대(취업자, 실업자, 비경인구) - 산업별 취업자(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3) 표본조사구 명부 정렬

• 어떤 특성에 치우친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조사구 명부 정렬

분류지표 현황

	동부	음면부
1차 분류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85.9m²미만) 3. 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9m²이상) 4. 기타주택	주택유형 1. 단독주택 2.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85.9m²미만) 3. 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9m²이상) 4. 기타주택
2차 분류	산업구조 1. 농림어업 10% 이상 2. 광공업 10% 미만 3. 광공업 10~19% 4. 기타	산업구조 1. 서비스 10% 미만 2. 광공업 10% 미만 3. 광공업 10~19% 4. 기타
3차 분류	경활상태 1. 실업자비율 충별 평균이상 2. 실업자비율 충별 평균이하	경활상태 1. 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상 2. 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하
4차 분류	행정구역 및 조사구 번호	행정구역 및 조사구 번호

4) 표본조사구 추출

- 25개 층별 표본규모만큼 확률비례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조사구 추출
- 5) 표본조사구내 구역설정 및 표본가구 선정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현지 확인하여 재정비 후 구역설정
 - ☞ 자세한 내역은 <Ⅲ-03> 참조

6) 표본조사구 번호부여

• 연동교체로 인해 구(舊) 조사구에서 신(新) 조사구로 완전히 교체 되는데 4개월이 소요되므로 두개 조사구 번호가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도록 부여 • 각 지역별로 분류지표와 행정구역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차례대로 연동 그룹부호와 연동그룹 내 일련번호 부여

1 2	3	4	5	<u>6</u>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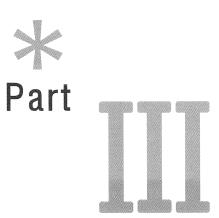
자 리	내용	# 류
12	시・도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3	동부, 읍면부	1동부 2읍면부
45	①②③⑥내에서의 일련번호	00 ~ 99
6	연동그룹을 표시하는 부호	1 2008. 1월 연동교체 조사구 2 2008. 5월 연동교체 조사구 : 9 2010. 9월 연동교체 조사구
7	연동구조에 따라 바뀐 횟수 표시	0 구표본(2003)의 개편당시 조사구 1 2005년 이후 바뀐 조사구 2 신표본(2007) 개편당시 조사구 3 2010년 이후 두 번째 바뀐 조사구
8	연동구조 외의 사유로 바뀐 횟수 표시	

[※] 조사구교체시 ①~⑥번째 자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⑦⑧번째 자리만 변경

06 표본개편에 따른 표본관리

● 표본개편을 통해 시군구별 현황이 반영되어 사무소별 표본규모에 변동이 생김- 이에 따라 연동교체 전후에 조사구의 관할사무소가 달라지더라도 원래의 연동 교체 방법 그대로 교체하면 됨

	연동교체	전 조사구		연동		연동교체	후 조사구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교체 교체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가 계 (양곡)	경활+가계	경활	경활	첫째달	경활			
가 계 (양곡)	가계	경활	경활	둘째달	경활	경활		
	가계		경활	셋째달	경활+가계 ^(양곡)	경활	경활	
				넷째달	경활+가계 (양곡)	경활+가계	경활	경활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죠아구교세



01 조사구교체 개요

가. 조사구교체 종류

	연동교체	부적합교체						
개념	연동구조에 따라 연동그룹별로 지정된 시기에 조사구교체	조사중이나 조사전에 계속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구교체						
교체시기	<vii부록-05>참고</vii부록-05>	부적합사유가 발생한 때						
교체방법	1구역씩 4개월에 걸쳐 교체	경활은 첫째달에, 가계는 셋째달에 동시교체						
구역설정심사	가구통합시스템・현지출장 병행	가구통합시스템 이용						
요청방법	별도의 요청 필요없음	메모보고 후 공문요청						

나. 부적합교체 신청양식

지방청/ 사무소	조사구 번 호	행정구역 부 호	행정-	구역명	총조사 번 호	가계 동향 조사	발 생 연월일	교체사유 코 드	상세 교체사유
서욱	111152-20	1115054	양천구	신월2동	022-A	0	2009:4.10	2집단북응	관리사무소의 협조도는 양호한 편이나, 60가구 중 40가구른 만난 상태에서, 1,2각인이 부녀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북응

○ 가계동향조사 : 가계조사구인 경우 ○표시

ㅇ 발생연월일: 표본조사구의 교체사유 발생연월일을 기입

ㅇ 교체사유코드 : 조사구를 교체하는 주된 사유를 기입

1가계부적합2기타부적합3재개발재건축4집단불응5가구수과소6다른조사중복7우범지역

교 체 사 유 : 전체 가구수, 파악한 가구수, 부적합 가구수 등 현지확인한 결과를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입

다. 요청기일 : 매월 20일까지 (연동교체에서 부적합한 경우는 사유발생 즉시)

라. 요청방법 : 공문 시행

- 교체사유에 따라 부적합여부가 불명확할 수도 있으므로 메모보고로 먼저 조사구의 현황을 보고한 후에 요청공문 시행
- ㅇ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메모보고가 우선되어야 함

마. 교체승인 통보일 : 매월 25일까지

02 조사구교체 사유

가. 가계부적합

- ㅇ 가계조사구에 농가가 산재하여 가계조사구역 설정이 불가하면 조사구교체
- 가계조사구의 01~02구역 내에 1인무직가구가 4가구를 초과하면 조사구교체
- 상가밀집지역을 이유로 가계조사구를 교체하지 않음 (단, 적격가구가 부족한 경우 01~04구역을 인접되지 않게 설정가능)

나. 기타부적합

- ㅇ 산업분포 부적합(사택 등 동일산업 종사자 70%이상)
 - 교체요청하면 표본관리과에서 지역별 산업집중도 등을 검토하여 교체여부 결정
 - 특광역시에서 농업종사자가 40%이상이면 조사구교체 (도지역은 검토 후 결정)
- ㅇ 오피스텔, 원룸, 학교인접
 - 생활패턴의 변화로 1인가구·오피스텔·원룸 등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면접 후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구교체 불가
 - 오피스텔은 주택외거처임을 감안하여 인접하지 않더라도 면접한 가구는 동일 구역으로 설정가능 (단,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이상 재방문해야 함)
- ㅇ 기숙사시설 : 조사모집단에서 제외되므로 조사구교체
- 영구임대, 영세민·장애인 과다 : 분배지표 등에 편향을 줄 수 있어 조사구교체 불가
- 광범위 조사구 : 비구역에 대한 표본관리 의무 없으므로 조사구교체 불가
 - 단, $01 \sim 04$ 구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면 조사구교체 가능

- ㅇ 행정구역부호 변경
 - 총조사 당시는 2006.1.1.기준이므로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를 확인하여 표본조사구가 2개 이상 읍면동의 관할에 속하면 조사구교체
 -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과 조사구번호의 동부/읍면부 부호가 다르면 조사구교체
 - 단,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승격이 된 경우는 다음번 연동교체까지 계속 조사
 - •시스템 입력시 변경 후의 행정구역번호를 입력
 - ◦동부/읍면부 코드가 상이하더라도 조사구번호는 기존 그대로 사용
 - 향후 연동교체시에 동/읍면부 코드에 맞는 행정구역의 조사구로 교체

사례

- 조사구번호 : 382049-20
- 행정구역부호 변경: 3810011(양산시 웅상읍) ⇒ 3810057(양산시 덕계동)

처리 방법

- 최신의 행정구역번호 입력 : 3810057
- 조사구번호 그대로 사용: 382049-20
- 2010.09. 연동교체시 경남 읍면지역으로 연동교체 (조사구번호:382049-30)

다. 재개발·재건축

- ㅇ 공고를 확인하여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6개월 내에 본격이주가 예상되면 조사구교체
- 라. 집단불응 : 일부가구의 불응이 아니라 집단불응인 경우만 조사구교체
- ㅇ 교체요청시 면접가구수, 불응가구수, 집단불응현황 등을 기입하여 요청
- 마. 가구수 과소 : 조사구 내 총가구수가 30가구 미만인 경우만 조사구교체
-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계속 전출이 예상되는 경우의 사유는 재개발·재건축임
- 바. 다른 조사와 중복
- 통계청 경상조사와 중복되면 조사구교체하고, 외부기관의 조사와 중복되는 경우는 이를 이유로 집단불응할 경우만 조사구교체 가능

사. 우범지역

- 초기 면접조사 후 전화조사나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전화·인터넷조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고 조사환경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교체
- ㅇ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수 거주하더라도 우범지역이 아니라면 조사구교체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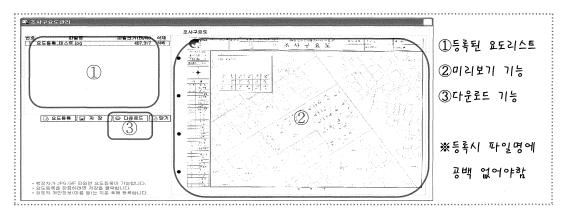
03 조사구교체 절차



(1) 조사구리스트 배포

표본관리과

- 경로 : **가구표본관리** → <mark>1</mark> 조사구생성
- 표본관리과에서 가구통합시스템에조사구리스트를 배포
 - 부적합교체의 경우 비고에 예비조사구의 행정구역부호와 대표주소를 기입하고, 교체조사구가 최종 결정되면 행정구역번호 등을 표본관리과에서 수정
 - 가구명부를 작성하다가 부적합교체할 경우 이미 작성한 가구명부는 담당자가 직접 삭제하고 재작성
- 조사구요도는 요청시에 요도 의 ⇨에 등록 → 해당 담당자가 [② 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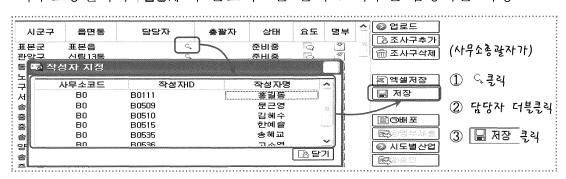


이 배포된 조사구의 상태 : 준비중

(2) 담당자 지정

사무소총괄자(팀장)

ㅇ 사무소총괄자가 답당자의 돋보기 🤇를 눌러 조사구별 담당자를 지정



○ 팀(분소)으로 분장되는 사무소의 경우, 담당자지정은 사무소총괄자가 하고 이후 구역설정 확인은 팀장(분소총괄자)이 수행

(3) 현지확인

담당자

ㅇ 조사구를 현지확인하여 <Ⅲ-2>의 교체사유에 해당하면 조사구교체 신청

(4) 조사구요도 작성

담당자

- 기송부한 조사구요도를 실제대로 수정·보완 → <Ⅲ-5>조사구요도 작성요령 참고
- ㅇ 조사구 경계 조정
 - 전체 85가구 이상이거나 조사구경계가 불합리•불명확한 경우 조정가능
 - 표본관리과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굵은 연필로 표시
- ㅇ 신축아파트 조사구는 담당자가 조사구경계를 설정
 - 첫 동(101동, 가동, A동, …)의 1층 혹은 최상층부터 연속된 60가구(±10 가구)를 표본조사구로 설정
 - 조사구요도는 조사구가 포함된 동 전체를 그린 후 조사구경계를 표시하며, 라 인별 평형을 함께 기입

(5) 가구명부 작성

담당자

- ㅇ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명부를 작성하고 가구통합시스템에 입력
 - 가구방문시 인사장, 협조공문, 리플릿을 지참가능
 - 가구명부 작성방법은 → <Ⅲ-4> 가구명부 작성요령 참고
- 총조사 당시의 가구명부 및 가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총조사 가구명부를 표본개편시 이미 송부하였으나 분실시 표본관리과에 재요청
- ㅇ 가구정보는 총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본관리과에서 제공함

|예시| 총조사 당시의 가구정보

사무소	조사	7 7 7	행정구역	총조사	거치	가구	기구원	납자	여자	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	취업자산업	기구구분
AA	11101	3 h	1123051	015-A	0001	001	4	2	2	2	-	-	-	2	-	-	AP	01
AA	11101	3 h	1123051	015-A	0002	001	4	3	1	-	-	-	2	-	2	-	FRL	01

- 제공정보 : 성별/연령별 가구원수, 취업자의 산업대분류, 가구구분

01.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02.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가구구분> 03.1인 가구 04.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05.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 총조사 자료 입력시에 입력되지 않은 항목(가구주성명 등)은 제공불가
- 총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는 제공불가
- 취업자산업은 총조사당시 조사된 제8차개정 산업코드를 제9차개정 산업 코드로 변환하여 제공

```
51731→38301,38302 E인데 G로 간주 74911→96999 S인데 M으로 간주
                                                     88100→63910 J인데 R로 간주
                            75991→73904 M인데 N으로 간주
65999→69400
               L인데 K로 간주
                                                     88329→85611 P인데 R로 간주
                            75992→73903 M인데 N으로 간주
                                                     88391→85611 P인데 R로 간주
               P인데 M으로 가주
74119→85709
74223→85701,85709 P인데 M으로 간주
                            75995→73901 M인데 N으로 간주
                                                     88991→85612 P인데 R로 간주
74322→39001,39009 E인데 M으로 간주
                            75999→63999 J인데 N으로 간주
                                                     88994→85612 P인데 R로 간주
               B인데 M으로 간주
74493→08090
                            75999→85709 P인데 N으로 간주
                                                     88999→85699 P인데 R로 간주
74499→39001.39009 E인데 M으로 간주
```

(6) 구역경계 가(假)설정

담당자

- 지리적으로 인접된 5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음
 - 단, 오피스텔은 주택외거처임을 감안하여 비(非)인접 가구를 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허용
 - : 면접한 가구와 3회이상 재방문에도 만나지 못한 가구를 분리 설정가능
- ㅇ 구역간 거처수는 다르더라도 가구수는 5가구로 균등해야 함
 - 불가피한 경우 일부 구역은 4,6가구로 설정 가능
 -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는 1개 거처를 2개 이상의 구역으로 설정 가능
- ㅇ 조사구 내 신축 가능한 공지는 누락없이 인접구역에 포함시켜야 함
- ㅇ 심사시에 구역경계가 수정될 수 있으니 가설정시에는 연필로 구역경계를 표시
 - 구역경계만 연필로 표시하고, 거처나 가구 및 출입문은 볼펜으로 작성

(7) 구역의 표본추출

담당자

- ㅇ 각 조사구별로 아래의 기준에 맞게 4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
 - ① 01~04구역이 서로 인접할 것
 - 단, 가계조사구가 상가 밀집지역이거나 읍면부의 광범위조사구이면 인접하지 않게 설정 가능
 - ② 01~04구역이 조사구 전체의 산업분포와 유사할 것

		- ~				15세이성	날 가·	구원=	수(가=	구주 3	[함]					
조사구번호 가계여부		조사구번호	가계여부	구 역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	노업(전	[체)			무직
			합계	Α	BC	D~U		F		GI		L~U	DEHJK	Z.		
		01~04구역														
		비구역														
		전체														
		01~04 %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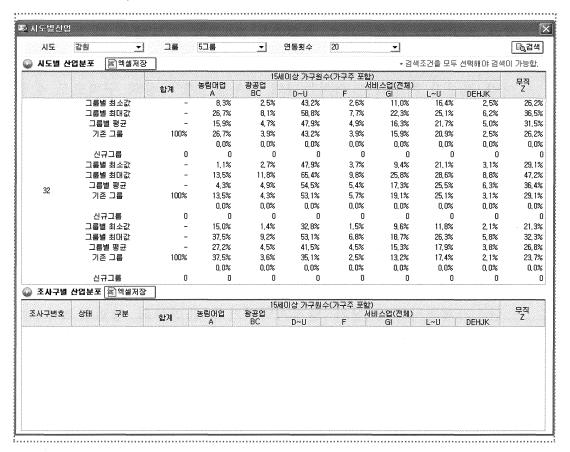
- ③ 가계조사구의 경우, 01~02구역 내 적격가구는 6가구 이상일 것
- ④ 가계조사구의 경우, 무직 1인가구는 4가구 이하일 것

- 조사구역에 01~04의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계방향으로 번호부여
- ㅇ 조사구역 추출이 곤란할 경우 표본관리과와 협의
- o 조사구역 추출 및 명부작성이 완료되면 Regg부제출 클릭 → 상태 : 중인대기

(8) 조사구역 설정 승인

사무소총괄자(팀장)

- 조사구별 구역 가설정 및 조사구역 추출이 끝나고 **☆인데기**상태인 조사구에 대해 총괄자가 자체심사를 실시
- 조사구별로 명부활를 클릭하여 명부내용을 검토한 후,
- ◎ 씨도별산업에서 시도별 산업분포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해야 함
 - 신규그룹 : 담당자들이 작성한 가구명부로부터 집계
 - 그룹최소값·그룹최대값·그룹평균: 경활자료로부터 집계
 - 신규그룹이 각 산업분류별로 그룹최소값~그룹최대값 범주내에 속할 것
 -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예. 대형마트 신축, 공장 입주)가 없다면, 차이를 발생시킨 조사구를 찾아 조사구역을 변경해야 함



- 산업분포 점검이 끝난 시도의 조사구를 선택하여 @会인 클릭 → 상태 : 확인대기
- ※ 시도별 산업분포는 연동교체일 때만 점검함
 - 부적합교체일 경우, 명부내용을 검토하고 해당조사구 전체의 산업분포와 01~04구역의 산업분포를 비교·검토 완료하면 ██♥♠만 클릭

(9) 조사구역 확정

표본관리과

- 표본관리과에서 지방청/사무소로 출장을 가서 구역설정을 심사·확정
- 출장일정 : 지방청별 의견을 수렴하여 3, 7, 11월말에 출장
- ㅇ 심사시 제출표류
 - 가구명부 1부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출력
 - 조사구요도 1부 (구역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조사구는 2부)
 - 산업분포표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출력
- 심사시의 미비점 및 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 클릭 → 상태 : 확인완료

(10) 구역설정 결과제출

권역총괄자

- ㅇ 심사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구역설정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 가구명부: 가구통합시스템에 입력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조사구요도 : 사본(B4크기) 1부를 제출하고 원본은 지방청 보관
 - 시도별산업현황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엑셀저장하여 첨부
- 가구명부는 비공개사항이므로 별첨하더라도 반드시 <u>비공개6호</u>로 지정

|예시| 구역설정 결과제출 공문

수신자 통계청장(표본관리과장)

(경유)

제목 2009년 5~8월분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구역확정 결과제출

- 1. 표본관리과-963(2008.12.31.)호와 관련입니다.
- 2. 우리지방청 2009년 5~8월분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56개의 구역확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임 가구명부_5그룹(별첨) 조사구요도_5그룹(별첨)

산업현황_5그룹_11서울

산업현황_5그룹_23인천

산업현황_5그룹_31경기. 끝.

(11) 전입일자 지정

표본관리과

○ 확인완료 인 조사구에 대해 ❷ ®전입일짜를 지정하면, 01~04구역 내의 빈집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표본가구관리명부에 생성됨



- 생성항목 : 조사구번호, 구역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행정구역번호, 주소, 상세주소, 거처구분, 주택소유관계, 조사여부, 전입날짜

04 가구명부 작성요령

● 가구명부는 실지 조사지역을 확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므로 대상/제외, 적격/ 부적격 등에 관계없이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해 누락 또는 중복없이 정확 하게 작성

가. 가구명부 입력방법

- ㅇ 방법1 : [교추기를 클릭하여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방법2 : 엑셀로 작성한 후 ◎가구명부업로드
 - ① 圖가구명부업로드양식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엑셀파일로 가구명부 작성
 - ② ②가구명부업로드클릭
 - ③ 및 파일 찾기 클릭하여 가구명부파일 열기
 - ④ R 저장 로 달기 클릭

나. 가구명부 기본사항



- 현지확인가구수 : ██ 제장 █ਊ삭제를 클릭하면 빈집을 제외한 가구수가 자동집계됨
- ㅇ 상태
 - 한가구라도 입력하면 → "작성중"
 - **◎명부제출**클릭하면 → "승인대기" (이후 담당자가 수정불가)
 - 총괄자가 승인하면 → "확인대기"
 - 표본관리과에서 확인하면 → "확인완료"
 - 표본관리과에서 전입일자 지정하면 → "표본" → 표본관리명부로 복사



다. 항목별 작성방법

٨	무소	가	계조사	구 조사	사구번호	ė	행정구		총조시 총	ŀ결과 조사	가구	현지획 1 _수 가구:	인 사도	구시군	동읍면	작성자	총괄지	상태
	TO	가	계+경혼	<u>†</u> 111	335_20		39010)11	111	1-1	6) 8	표본	표본군	표본읍	(TEST9)김표	본 테스트총	괄 작성중
0 7	누구명	부 업.	로드[@	가구명	부 엑셀	저장	冒フ	누구명	부 업로	드양식					⊘ 명!	부제출 🔯 추	가 🖳 저장	출산제 □ □ 닫
	구 역기 처 가 구 가구주 가구주		JL 7	가계조사대 ㅏ구거 청소 유 ! 수구 분형 태 적 격 부적격			내상	상 주		: 가구원산업		. 인구	*총조사당시					
I	구역 번호	건 첫 번 호	갑 궃 번 호	성구명	간 [~] 접	원수	수 원	를 H	적 격	부적격	사 유	- 21	번 지 APT연립	통 반 동 호	(12개의장	j 7,7	가구	비고
prince.	01	35	0101	김단군	D	4	1	1	2	-	danama	표본1리	11번지	5통 1반	C(2),O(1)	00	001	통장
	02	36	0101	박혁거	С	3	1	4	2			표본1리	11번지	5통 1반	Z(1)	002	. 001	
	03	37	0101	고주몽	Н	1	1	4	3			표본1리	12번지	1층		03	001	
	04	37	0201	부온조	Р	3	1	4	1			표본1리	12번지	2층	P(1)	03	002	협조도 좋음
	05	38	0101	대조영	L	3	1	1	3			표본1리	20번지	1층좌	Z(1)	036	001	
	06	38	0000	빈집								표본1리	20번지	1층뒷방		038	000	월세방,곧입주
	06	38	0201	왕건	Α	2	1	1	5	01	농가	표본1리	20번지	1층무		038	002	
	07	38	0401	이성계	Z	5	1	1	4			표본1리	20번지	2층	Z(2)	038	004	

>빈집 : 가구번호는 '0000', 가구주성명은 '빈집'

>위악같음표시(〃)하지 말고 직접 입력

구역번호

- 。 <Ⅲ-03-⑦> 구역의 표본추출 시에 부여한 구역번호를 기입
- 위와같음표시(") 하지 말 것

거처번호

- 총조사 당시의 거처번호와 다르게 부여해도 무관
 - ☞ <N-03-④> 거처번호 부여 방법을 따름
- 빈집도 거처번호 부여
- 1개의 거처에 2개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인가구를 제외한 동거가 구도 반드시 거처번호를 입력
- 위와같음표시(") 하지 말 것

가구번호

- 현재 조사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기입
- 앞 2자리 : 가구 일련번호
 - 구역번호에 관계없이 거처번호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01」부터 부여
- 뒤 2자리 : 가구 변동횟수
 - 가구명부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 변동이 없으므로 모든 가구가 「01」임
- 빈집은 반드시「0000」입력

※ 유의사항

- ㅇ 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 1개의 가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임
- 구역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거처번호나 가구번호를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주의

가구주 성명

- 가구주 성명을 기입
- 가구주란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IV-03-⑳> 가구주정의 참고
- 빈집인 경우 반드시「빈집」이라고 기입

가구주 산업

。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부호만 기입 ☞ <VII-3> 산업분류표 참고

가구원수

● 대상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총 가구원수 (※가구주 포함)

거처구분(☞ <VI-01> 거처 참고)

1.단독주택2.아파트3.연립주택4.다세대주택5.비거주용 건물내주택6.주택이외의 거처

• 오피스텔은 「6.주택이외의 거처」로 분류

소유형태(☞ <N-03-⑩> 참조)

1.자기집 2.무상주택 3.사택 4.전세 5.영구임대 6.(보증부)월세,사글세

가계동향조사 대상

-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표본조사구의 모든 가구에 대해 작성
- 적격 또는 부적격 중 해당란에 해당 번호를 기입
 - 적격가구 : ①사무직 ②생산직 ③자영자 ④무직 ⑤부적격
 - 부적격가구 : 해당되는 부호를 기입 ☞ <VI-03> 참조)

01.농가

02.어가

03. 단독가구

04.음식, 숙박업가구

05.하숙업가구

06.부정기적 출타가구

07.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08.비혈연 자취가구

09.기타 분류 불능가구

10.외국인가구

주소

- · 동·구·리 : 동·구·리 중 최소 단위 행정구역명을 기입
- 번지·APT·연립
 - 건물이름이 있는 경우(아파트, 연립 등): 건물이름 기입
 - 건물이름이 없는 경우 : 번지를 기입
- 。 통반 · 동호
 - 동이나 호로 구분이 되는 경우 : 동. 호수를 기입
 - 동이나 호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통반을 기입
 - · 공동주택 등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있을 시 「2층좌」,「반지하」,「우측」 등 가구의 실제 위치를 상세히 기입

가구원산업

-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산업을 기입 (※가구주 제외)
- 산업 대분류를 먼저 표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산업의 가구원수를 표시
 - 2개 이상 산업을 표시할 경우 공백없이 쉼표(,)로 구분해야 함예) 농업1명, 제조업2명 ⇒ A(1),C(2)
- 무직(Z)인 가구원에 대해서도 작성할 것
 - 이 때의 무직은 학생, 주부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모두 포괄

총조사 당시(거처.가구)

- 총조사 당시의 요도와 가구명부를 바탕으로 당시의 거처번호와 가구번호를3자리로 기입
- 신축(거처, 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음 → 0처리됨
- 현재 철거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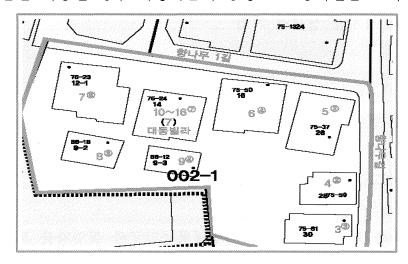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응답태도, 주의사항, 특이사항 등)

05 조사구요도 작성요령

- ◎ 표본조사구의 조사대상 지역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구요도를 작성
- ◎ 총조사 당시의 전산요도를 수정·보완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작성하여 사용

가. 조사구 경계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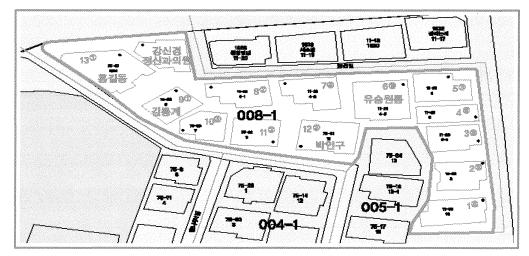
- ㅇ 전산요도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여 조사구경계를 확인하여 적색으로 표시
- ㅇ 지형지물을 이용할 경우 지형지물의 중앙으로 경계선을 표시
- |그림1|



나. 주요 지형지물 확인 · 보완

○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표시하되, 뚜렷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 조사지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건물·상점 등 간단한 설명을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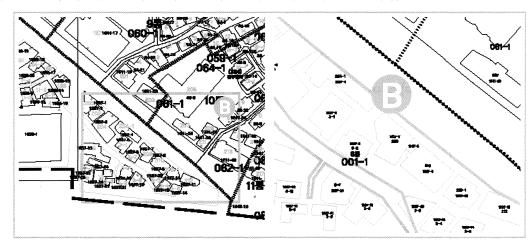
|그림2|



조사구내 공터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 택지, 농지, 임야)※ 용도 확인은 관할 지자체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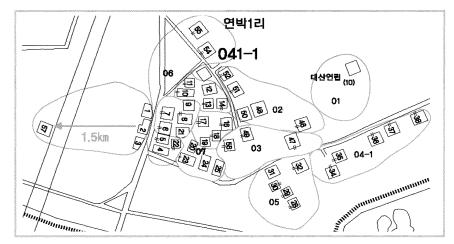
- 다. 범위가 넓거나 주택이 밀집한 경우
- ㅇ 조사구 지역이 비교적 넓거나, 주택이 밀집된 경우 별지에 확대하여 작성
 - 이 때 요도 우측 상단(매중매) 란에 총 몇 매중 몇 매 기입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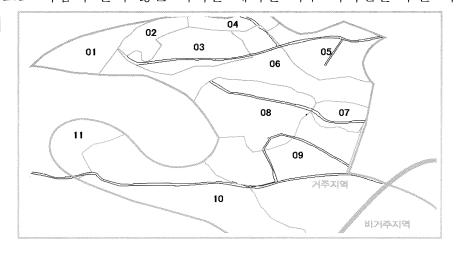
ㅇ 멀리 떨어진 독립가옥은 거리를 축소하여 거처를 표시하고 그 거리를 요도에 기입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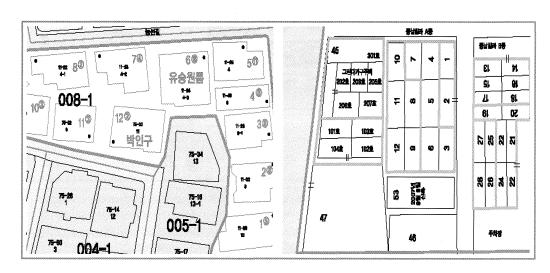
ㅇ 절단선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거주 지역만을 부분 확대하여 작성

그림5



- 라. 거처확인 및 출입문 표시
- 모든 건물(특히 다방,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건물)에는 출입문을 표시
- 전산요도에서 출입구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보완을 하거나 요도를 직접 그리는 경우는 ++-표시
- ㅇ 출입문이 2개 이상이 있으면 그대로 해당 위치에 표시

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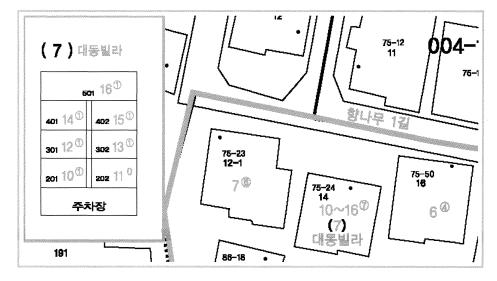
- 마. 거처번호 부여 및 거주 가구수 표시
- ㅇ 조사하는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번호를 부여
- ㅇ 총조사 당시의 거처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롭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
- ㅇ 신축중이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예 : 관공서)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ㅇ 빈집은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거처내에 빈집이라고 표시
- ㅇ 거주 가구수를 거처번호 우측 상단에 연필로 기입

ㅇ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그 형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

- 계단식 : 저층부터 계단 양측으로 거처번호 부여

- 복도식 : 저층부터 층별로 지그재그(우→좌, 좌→우)로 거처번호를 부여

그림7



바. 조사구안내도

- 조사구요도를 직접 그린 경우 뒷면에 조사구안내도를 작성하여 주변에 대한 정보 기록
 - 인터넷 등 외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출력하여 조사구위치를 표시 후 붙여도 됨

그림8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알프레드 디 수지 (류시화 엮음)

 춤추락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갯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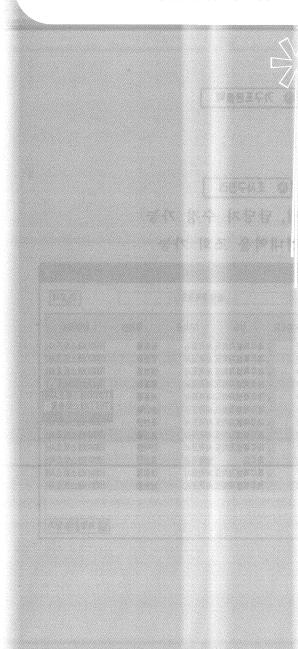
 사랑하라
 한번도
 상치
 받지
 않은
 갯처럼

 노래하라
 한번도
 듣고
 있지
 않은
 갯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갯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갯처럼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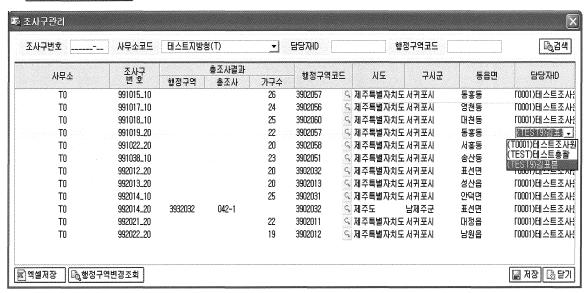
01 기본사항

- 표본가구관리명부는 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전입, 누락, 착오, 신축 등으로 새로운 조사대상 가구가 표본가구로 편입되거나, 가구 및 가구원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수정하여 사용
- ◉ 표본가구관리명부 입력/출력 경로

- **입력** : 조사입력 → <mark>₪</mark> 가구부분조사입력

- 출력 : **중합현황** → 🖟 가구명부현황 → 🚺 **가구표본출력**

- ◎ 조사구 일괄관리
 - 경로 : 조사입력 → 1에 가구부분조사입력 → ② 조사구관리
 - 행정구역부호,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담당자 수정 가능
 - 🗓 핵정구역변경조회 에서 기간별 행정구역 변경내역을 조회 가능



02 표본가구관리명부 양식

◉ 종이 표본가구관리명부

[1] 가구에 관현	한 사항							
1	조사구 번호	② 구역번호	③ 거처번호	④ 가구번호	⑤ 총조사번호	⑥ 담당자 ID	⑨ 거처구분	⑩ 주택소유관계
(7) 주소 상세주소	읍면	동	행건	덕구역부 호	® ₹	화번호	1. 단독주백 2. 아마트 3. 언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계주봉주택 6. 주택어외과칙	1. 작기심 그 무상존백 3. 사 백 4. 전 내 5. 영무임대 5. (보충부)왕세, 사문사
① 조사여부	② 경활대상이	부 ③ 농	가여부 (6) 외국인가구여부	⑤ 가계가구구분	⑥ 가계부제출여부	② 미제출사유	(8) 가계부입력방식
□ 경 활□ 가 게□ 양 목	1. 조 사 2. 물 용 (사유) 3. 제 외	1. 농 가 2. 비항가	2, 4	국인 가구 국인 + 외국인 국인 가구	[] 최 점 [] 부청점 (사유)	1. 정상제품 2. 무성제품 3. 미세품 1. 대상의	사유	1, 일반(수가) 그, 원작가세부
연도 전입 전출	월 일	전출입사유	연도 전입 전출	월 일	전출임사유			
20번호 23 이	름 20가구주관계 (3)성별 09·4	(년월일(양력)	② 학 력	(%) 경활상태	전입 / 전출날짜		60 메모
01		1. \http://discourse.com/10.1000/10.10			1. 취임 2. 취임 3. 취임 4. 제외 5. 봉운(외하임)	전함 전함 시기	70	□ 정확인터! □ 외국인
02		L VI 2, 64			1. 취임 2. 실임 3. 비정활 1. 재외 5. 분용(외국인)	선호 : : : : : : : : : : : : : : : : : : :	<u>a</u>	□ 경확인다 □ 외국인
03		1. 1/2			1. 취업 2. 설업 3. 마정함 4. 제외 5. 분응(외국인)	전임 진출 사유	7	☐ 성환인터 ☐ 외국인
04		1, \tr\ 2.01	anaprana i		1. 취임 2. 설업 3. 비경철 4. 제의 5. 분응(외국인)	전위 선생 사유	25	□ 경환인다 □ 외국인

◎ 가구통합시스템 입력화면

5 표본가구 세							********						
	부정보												Z.
조사구-번호	ing (구역	거처	가	구번호	총조사 변화	Σ	사 무 소	담당	THD		대상조사정	보
	조사 여부		주소지		Ľå			전화 번호	거처=	2분	주택소유	외국	인가구며부
경활♥ 가계1	☞ 양곡소비	IT 집세F	상세주소							<u>.</u>		_	<u>-</u> J
경활 경활 문항		경활전출날짜	경활전출입	나유		경활 대상		농가여부	1 6				\$ \$
				ı	_		⊥		. 1				dr ve
가계 문항		가계전출날짜			가구구분	부적격	사유	제출여부	0	제출사유	1인가구0	titte gemanate	부입력방식
가구 메모	@ .			<u>-</u>							긔	-	
		[시 → 재전입치	on the second second	ŀ구원숨김									가구원추가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민	반나이 교육	경찰_반	계 경활상태	경활_전입	경찰_선출 기	계_관계 취업여	무무지위	가게_선입	가계_전출	경활인터넷	선자가계두
가구원번호 생년월일(양력)			가구원성명 핸드폰번호			자료가 없 성 별 학력		<u>의</u> 외국인	면부			1	
생년월일(양력) 경제활동 경제활동 메모	(의 전입날자				티 건물	성 별	<u>.</u> 71	구주관계	i	크 경활상태 종사상지위(7	_] ~ ŀ계기준)		77
생년월일(양력) 경제활동			핸드폰변호	tion of the second of the seco		성 별 학력	<u>.</u> 71	based b. J.	1			1 1	<u>.</u>

03 작성요령

①조사구 번호	②구역번호	③거처번호	④가구번호	⑤총조사번호	⑥담당자ID
1 2 3 4 5 6 - 7	8 1.2	1. 2	1 2 3 4	1 2 3 - 4	1 2 3 4 6

【1】가구에 관한 사항

① 조사구번호 123456-78

• 🗓 🖸 : 「한국 행정구역 분류」의 16개 시·도를 나타냄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대전 26.울산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 ③ :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

1.특별시, 광역시 전체와 도의 동부지역 : 행정구역코드 6,7자리가 50이상

2.도의 읍부 또는 면부 지역

: 행정구역코드 6.7자리가 50미만

- 45 : 25개 층별 연동그룹 내에서의 일련번호(00~99)
- ⑥ : 연동그룹번호(1~9)

1.2008년 1~4월 연동교체

2.2008년 5~8월 연동교체

3.2008년 9~12월 연동교체

4.2009년 1~4월 연동교체

5.2009년 5~8월 연동교체 6.2009년 9~12월 연동교체

7.2010년 1~4월 연동교체 8.2010년 5~8월 연동교체 9.2011년 9~12월 연동교체

- * 이후 3년마다 계속 연동교체됨
- 7] : 연동구조에 따라 바뀐 횟수 🖙 < VII-5> 경활 연동구역별 조사횟수 참고

0.2003년 표본개편 당시 조사구 1.2005년 이후 연동교체된 조사구

2.2007년 표본개편 당시 조사구 3.2010년 이후 연동교체된 조사구

- 🔞 : 연동교체 외의 사유로 바뀐 횟수 표시
 - 구역설정 기간에 부적합 교체한 경우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0] 임
- 기구통합시스템 지사구-변호 의
 - 돋보기모양을 눌러서 해당되는 조사구번호를 선택하여 입력
 - ◎ 조사구레 에 등록된 조사구번호만 선택가능



② 구역번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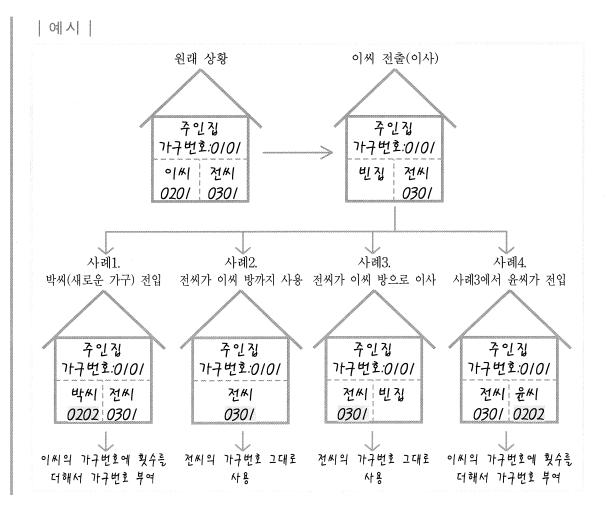
- 구역확정시 지정한 구역번호를 2자리 숫자로 기입
 - 01~04구역만 가구관리명부를 작성하므로 01~04만 유효
- 경활구역조정으로 인해 구역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적시에 구역번호 변경 가구통합시스템에서 구역번호를 수정하는 방법은 < V-1>참고
- 적격가구 부족 및 회수율 저하에 따른 조정(가계구역변경, 가계구역확대, 가 계가구대체)의 경우는 구역번호를 변경하지 않음

③ 거처번호 <u>12</u>

- 구역확정시 작성한 가구명부의 거처번호를 그대로 사용
- 거처번호는 고유번호가 되며 철거된 거처번호는 재사용 불가
- 단, 철거 후 동일 위치에 개축이나 신축이 이뤄졌다면 재사용 가능
- 신축이나 누락으로 거처 번호를 새로 부여할 때는 마지막 거처 번호에 연결 되도록 부여
- 만일 거처번호가 1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첫 자리에 영문 알파벳을 순서대로 부여(예: 100번⇒A0, 101번⇒A1, …, 110번⇒B0, …)

④ 가구번호 1234

- 112 : 거처 내 가구일련번호
 - 한 거처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인가구는 반드시 첫번째 순위 번호를 부여, 나머지 가구는 그 다음 순위번호부터 부여
- [3] 4] : 가구의 변동횟수를 부여
 - 변동횟수는 조사구 설정 당시에는 「01」로 부여하고, 조사기간 중 전출입으로 변동될 때마다 변동회수 1회씩 증가
 - 전입가구는 가구번호 끝의 두 칼럼(③[4])만 변동시켜 가구번호를 새로 부여 (□ 예시의 사례1,4)
- 예외사항(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 조사구내에서 거처나 구역이 변동된 경우
- 동일 거처 내에서 가구가 이동한 경우(☞ 예시의 사례3)
- 동일 거처 내에서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한 경우(☞ 예시의 사례2)



⑤ 총조사번호 123-4

• 요도에 기입되어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조사구번호 4자리를 기입

사무소

12(3)

- 12 : 사무소 코드
 - · AA경인 AB인천 AC수원 AD성남 AE의정부 AF부천 AG평택 AH고양 AI구리 AJ이천 AK화성
 - · BA동북 BB포항 BC안동 BD구미 BE상주 BF경산 BG청송 BH춘천 BI원주 BJ강릉 BK속초 BL삼척 BM영월
 - CA호남 CB목포 CC순천 CD여수 CE강진 CF해남 CG보성 CH전주 CI군산 CJ정읍 CK남원 CL진안 CM제주
 - · DA동남 DB울산 DC창원 DD진주 DE통영 DF김해 DG거창 DH합천
 - · EA충청 EB천안 EC보령 ED서산 EE홍성 EF청주 EG충주 EH옥천 EI증평
- ③ : 팀 및 분소 코드 (분소는 9)

6 담당자ID 12345

• 12 : 사무소코드의 앞2자리

• 345 : 조사담당자 고유번호

			행정구역부호	®전화번호	1
주	ハモナ	비민증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상세주소				

① 주소

1234567

- 행정구역부호
 - <u>1</u>2 : 시도부호, <u>3</u>45 : 시군구부호, <u>6</u>7 : 읍면동부호
 - 경활입력기간에 **◎ 조사구관리의** □ 합정구역변경조회를 확인하여 최신의 부호로 표시
- 주소
 - 시군구명, 읍면동명, 상세주소를 기입란이 분리되어 있으니, 상세주소에는 리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등을 입력할 것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이 행정주소가 같은 경우, 개개의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1층, 좌우, 안채 등)를 함께 기입
- 기구통합시스템 | 현정구역 다아코드검색 상세주소
 - 「코드검색」에서 행정구역부호나 읍면동명으로「검색」하여「입력」하면 행정구역부호, 시군구명, 읍면동명이 수정됨
 - 「코드검색」에는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만 나타나므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행정구역부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할 것
 - 조사구 내 모든 가구의 행정구역부호, 시군구명, 읍면동명을 한꺼번에 수정 하려면 『조사구관리』 버튼 이용

⑧ 전화번호

1234567891011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
- 숫자나 「?」만 입력 가능
- 앞3자리(미23)에 가능한 값: 010, 011, 016, 017, 018, 019, 050, 070, ??? 02, 031, 032, 033, 041, 042, 043, 051, 052, 053, 054, 055, 061, 062, 063, 064
- 전화번호를 불응할 경우는 공백으로 두거나 「??? ???? ????」으로 처리

⑨거처구분	⑩주택소유관계
1.단독주택	1 1.자가 1
2.아파트	2.무상주택
3.연립주택	3.사택
4.다세대주택.	4.전세
5.비거주용주택	5.영구임대
6.주택이외거처	6.(보증부)월세,사글세

⑨ 거처구분

 Π

• 해당되는 거처번호를 기입 ☞ <VI-1> 거처 참고

1.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허가받은 4층 이하 주택 포함) 2.아파트

3.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4.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5.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건물에서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 6.주택이외 거처 :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분리매매)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예)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임시구조물 등

• 주택유형 비교

┌ 다가구단독주택 :분리 매매 불가

└ 다세대주택 :분리 매매 가능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m²(200평) 초과(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연립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 이하 └ 다세대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주거용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되 주거용이 영업용보다 많음

└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영업용 건물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살림하는 부분이 있음

① 주택소유 □

• 해당하는 주택소유 코드를 기입

: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 1.자기집

2.무상주택 : 타 소유의 주택을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형태

: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유상 및 무상) 3.사택

4.전세 : 보증금(전세금)을 지불하고 나갈 때 그대로 다시 찾는 형태

5.영구임대 :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민간·공공임대를 모두 포함

6.(보증부)월세,사글세

- 보증부월세 : 보증금을 내고 매월 세를 지불하는 형태(나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음)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태 - 월세

: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태

•	\ \ \ }c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0	⑩경활대상여부	⑬농가여부	④외국인가구여부
□ 가 계 2	.조 사 불 응 (사유) 3.제 외	1.농가 2.비농가	1.내국인가구 2.내국인+외국인 3.외국인가구

① 조사여부

- 불응/제외, 적격/부적격, 제출/미제출에 관계없이 해당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가구에 체크할 것
- 구역조정, 가계가구대체 등으로 가계동향조사 여부에 변화가 있을시 적시에 반영
- | 가구통합시스템 |
 - 조사매 항목 해당조사를 선택

① 경활대상여부 12

- [] : 조사여부 에서 경활선택된경활♥ 가구는 경활대상여부를 반드시 기입
 - 외국인이 아닌 일부 가구원이 불응하는 가구는 「2.불응」표시 ← 고용통 계팀의 지침을 따름
- 「3. 제외」에 해당하는 가구
 - 15세 미만 가구
 - 외국인 가구
 - 영외거주 직업군인(1인) 등
- ② : 「2. 불응」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입
 - 1.사생활 노출 기피 2.면접거부
- 3.매사 불신

- 4.연간조사 부담
- 5.가계동향조사 부담
- 6.바쁘고 귀찮아서

- 7.가정불화
- 8.환자가 있어서
- 9.기타(해고 등)

③ 농가여부

- 경활에서 사용하는 농가 기준으로 농가여부를 판단함
 - 농가 :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

1.농가

2.비농가

14 외국인가구여부

• 국적으로 외국인여부를 파악하여 외국인가구여부를 기입

1.내국인가구

2.내국인+외국인

3.외국인가구

⑮가계가구구분	⑥가계부제출여부	⑪미제출사유	⑩가계부입력방식	
□ 적격	1	1 2	1	
□ 부적격	1.정상제출	사유	1.일반(수기)	
(사유)	2.부실제출		2.전자가계부	
Chance Chapter Chance C	3.미제출			
	4.대상외			

① 가계가구구분① 1 2

- 조사며부 에서 가계선택된 가계♥ 가구는 적격가구 여부를 반드시 파악
- 가구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구주의 직업에 의거하여 구분
- 12 : 부적격 사유번호 🖙 < VI-3> 가계 부적격 가구 참고
 - 의사소통 및 가계부 기입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인가구는 부적격임 ← 사회 복지통계과의 지침을 따름

6 9 K 1		
* * * * * *	01. 농가	02.어가
# # # #	03. 단독가구	04.음식, 숙박업가구
5 6 6 7	05.하숙업가구	06.부정기적 출타가구
6 5 6	07.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08.비혈연 자취가구
	09.기타 분류 불능가구	10.외국인가구

- 기구통합시스템
 - 적격가구의 가구구분(사무직/생산직/자영자/무직)은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 가구구분 분류 규칙 ← 사회복지통계과의 지침을 따름

가구주 직업대분류 가구주 종사상지위	1관리자 ~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 9단순노무종사자	A군인	Z무직
1상용, 2임시, 3일용, 6무급	1.사무직	2.생산직	4 시민지	4 🗆 🛪
4고용주, 5단독자영, 7기타	3.자	영자	1.사무직	4. 十当

단, 불응가구는 직업과 종사상지위가 입력되지 않으므로 가구구분을 직접 파악하여 입력해야 함 (무응답가중치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

가꼠조사 문항	가구구분 ▼
가구 메모	1,사무직 2,생산직 3,자영자
	4.무 직 5.부적격

- 부적격가구는 「5.부적격가구」로 직접 선택
- 부적격가구가 적격가구로 바뀌었을 때는, 「1.사무직」~「4.무직」중 하나를 선택 후 ᠍™®(F3) 하면 분류 규칙에 따라 가구구분이 자동분류됨
- 가구대체를 위해서 가계조사구의 경활만 하는 가구의 가구구분도 자동분류됨 단, 및 제공(F3) 을 해야 자동분류된 값이 반영이 됨

16 가계부제출여부

1.정상제출 2.부실제출

3.미제출

- 부실제출 가구
 - 실제 수입/지출에 비해 절반이상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외 가구
 - 전입연월이 기준연월과 같거나 더 나중이면 대상외 가구임
 - 전출연월이 기준연월과 같거나 더 이전이면 대상외 가구임

① 미제출사유 12

• 제출여부가 「3.미제출」인 경우 해당되는 미제출사유 코드를 입력

01. 사생활 노출 기피

02. 면접거부

03. 약속불이행

04. 맞벌이부부

05. 주부취업(맞벌이외)

06. 주부부재

07. 불능(연로)

08. 불능(장애)

09. 불능(장기투병)

10. 기타

• 미제출사유 중 「07」~「09」는 불능사유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임

07.불능(연로) : 모든 가구원이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가계부 기입이 곤란한 가구

08.불능(장애) : 응답자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조사가 곤란한 가구

09.불능(장기투병): 응답자가 6개월 이상 장기투병자이면서 가계부 기입이 곤란한 가구

- 단. 불능가구도 적격가구이므로 위에 해당하더라도 가계부 작성이 가능한 가구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⑧ 가계부입력방식 □

• 전자가계부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2.전자가계부」에 표시

1.일반(수기)

2.전자가계부

- | 가구통합시스템 |
 - 전자가계부 가구(원)로 등록하기 위한 설정
 - ① 가계조사 대상가구
 - ② 가구구분이 적격
 - ③ 제출여부가 제출
 - ④ 대상조사정보의 가계부영역이 인터넷조사 ☞ 전자가계부 사용자등록 및 관리는 사회복지통계과로 문의



	19	경활 전	입/전출	날짜	rate source poor	20	가계 전	[입/전출 ^년	날짜	②1메모
	연도	월	일	전출입사유		연도	월	일	전출입사유	
전입	1 2	3 4	5 6	*1 2	전입	1 2	3 4	5 6	1 2	
전출	1 2	3 4	5 6		전출	1 2	3 4	5 6		

19 전입(출)날짜 123456

- 해당가구가 거처에 이사 온(간) 날을 기준으로 기입
 - 경활전입날짜는 미리 입력 불가
 - 경활조사에 응답한 후 당월에 전출간 가구(원)는 경활입력 마감 후나 익월 경활 입력기간에 전출날짜를 입력
- 연동교체에 의한 전입/전출날짜

	연동전입날짜	연동전출날짜	설정사유	적용시기
경활부문	해당월 8일	해당월 8일	집세조사 기간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방지	2009년
가계부문	해당월 1일	전월 말일	월중 전입/전출로 인한 제외 방지	1월부터

| 예시2 | 가계조사구이면서 2009년 5~8월에 교체되는 연동5그룹의 01구역

11-1	S1 S1 S1 (1)	교체전 : 5	그룹 10조사	구 01구역	교체후 : 5	그룹 20조시	구 01구역
시기	입력대상	조사 며부	경활전출날짜	가계전출날짜	조사 여부	경활전입날짜	가계전입날짜
5월	5월분 경활	경활厂 가계☞	2009-05-08	_	경활☞ 가계	2009-05-08	-
6월	5월분 가계	"	n n		"	"	17:1-1
6월	6월분 경활	"	"	_	"	"	
7월	6월분 가계	"	11	40 F - 10 F	"	"	7
7월	7월분 경활	"	"		"	"	
8월	7월분 가계	경활 가계	"	2009-07-01	경활区 가계区	"	2009-06-30

- ※ 가계 전출/전입날짜는 경활 전출/전입날짜 수정시에 미리 수정 가능
- ※ 조사여부는 위의 예시에 맞게 해당 시기에만 수정

② 전출입사유 12

• 전입, 전출 및 연동교체 등으로 가구 및 가구원 변동 구분코드 기입

11 가구전입 12 개인전입 21 전입누락 25 출생 31 (부적합)조사구교체로 인한 전입 32 구역조정으로 인한 전입 43 분가	51 가구전출 52 개인전출 61 전출누락 75 사망 81 (부적합)조사구교체로 인한 전출 82 구역조정으로 인한 전출 93 통합
44 연동교체에 따른 전입	94 연동교체에 따른 전출

- 조사구 내에서 가구(원) 거처이동은 **◎가구번호점점**으로 거처번호만 수정

②1) 메모

: 가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메모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220번호	②이름	24가구주관계	您성별	您생년월일(양력)	꼢학력
		8.5			
01			1.남		nice in a second
			2.여		

가구원 여부 판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문 : ① 상주개념으로 가구원 판단 → ② 제외자 판단 - 가구워에 포함되는 조사제외자는 가구통합시스템에 입력 (경활상태: 제외자)

• 가계동향조사 부문 : ① 상주개념으로 가구원 판단 \to ② 15일미만 상주시 대상외

가구원 포 함	 표본가구에 15일 이상 상주하는 자 (혈연 불문) 입원, 가구원 간호 등으로 부재중인 자 (기간불문) 출장, 유학, 여행, 친척집 방문으로 3개월 미만 부재중인 자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이 1개월 미만 부재중인 자 공익근무요원・병역특례요원으로 출퇴근하는 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자 조사기준월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원 제 외	 전입/전출에 의해 표본가구에 15일 미만 거주한 자 요양원, 기도원,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수용중인 자 취업, 취학 등으로 조사구 밖에서 하숙・자취・기숙사생활 하는 자 경찰대학・사관학교에 입교해 교육중인 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소년원 수감자

② 번호 12

-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14명 이상)에는 가구관리명부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추가된 조사표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은 기입 생략
-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 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이미 사용했던 가구원 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재사용 불가
- | 가구통합시스템 |

가구원삭제 작	제가구원표시 재전입처리 삭제가구원숨김 삭제취소 인터넷사용자등록 가구원추가
▶ 가구원추가 (단축키:)	∘ 가구에 삭제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역제가구원표시로 삭제된 가구원을 확인 후 가구원을 추가해야 함
▶재전입처리	전출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 사용가구원번호가 맨 마지막 다음 번호로 자동으로 부여되고 전입/전출날짜 외의 기본정보가 그대로 복구됨
·삭제취소	가구원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 사용하며, 가구원번호 등모든 정보가 그대로 복구됨

23 이름

- 가구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입(최대 20자)
- •불응으로 인해 가구원 상세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구원수만큼 가구원을 작성
 - 이름은 「불응1」, 「불응2」, 「불응3」 등으로 입력

② 가구주관계 12 12

01.가구주 02.배우자 03.미혼자녀 04.기혼자녀 05.손자녀 06.부모(장인,장모) 07.조부모 08.미혼형제·자매 09.기타

- 빈칸에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
- 차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고모의 장녀, 가정부, 하숙인, 점원, 고용원 등
- 손자녀는 기혼 및 미혼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 •기혼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은 기타에 포함

가구주의 정의 (경활부문)

가구주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함
- 만일 호주나 세대주가 전혀 소득이 없이 단순히 타가구원의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
 하는 경우 ⇒ 가구주로 처리해서는 안됨
- 가구주가 1년 이상의 해외근무, 장기 병원입원일 경우 ⇒ 다음 순위의 가구원을 가구주로 지정

가구주의 정의 (가계부문)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음
- 단순히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름
-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는 다를 수 있음
- 직업군인의 경우 가구관리명부에 가구원으로 조사하여 기입하고 가구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구주로 처리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동일가구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가구주 요건에 해당할경우 가구주로 처리

②5) 성별

1.남자

2.여자

②6 생년월일(양력) 12345678

- 호적 또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양력)을 기입
- 실제 출생한 생년월일을 알기 위해 다음의 순으로 질문
 1. 생일 → 2. 양력/음력 → 3. 나이, 띠
- 음력인 경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나이와 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띠」를 중심으로 기입
- 기구통합시스템
 - 음력생일만 파악한 경우 생년월일(양력) 및 의 (혹은 F1)를 클릭하여 양력으로 환산 가능



27 학력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3 1 4 1 5 2 6 1 7 2 8 2 9 2 9 2 9 2 9 2 9 2 9 2 1 2 1 2 1 2 1 2 2 3 2 3 3 4 4 4 5 4 6 4 7 4 8 4 9 4 1 1 1 1 1 1 2 2 2 4 2 4 3 4 4 4 4 4 5 4 6 4 7 4 8 4 8 4 8 4 8 4 8 4 8

- 조사대상기간 현재 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고용통계팀』의 「학력」을 참고
 - 해(年), 학기가 바뀜에 따른 학력 변화를 반영해야 함
- <a>□ : 학교구분

0.무학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전문대학 5.대학교 6.대학원(석사) 7.대학원(박사)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정규 교육과정(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이수 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취득(검정고시 등)한 경우
- 기능훈련, 직업훈련, 학원, 입시학원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2년제, 3년제 대학은 「4. 전문대학」에 해당
- 2 : 계열구분

학교구분		계열구분	
학교구분 = 0,1,2	0.중학교 이하		
학교구분 = 3	1.인문계열	2.예술·체육계열	3.상농공수산계열 등
학교구분 = 4,5,6,7	1.인문·사회계열 4.자연계열	2.예술·체육계열 5.공학계열	3.사범계열 6.의약계열

- 구사범(고등)학교 및 고졸 검정고시는 「3.상농공수산계열 등」에 해당
- 전문대 이상은 1~6 중 해당되는 하나에 표시
- ☞ 계열 구분코드의 상세내역은 <VI-5> 계열별 해당 학과 참조
- ③ : 이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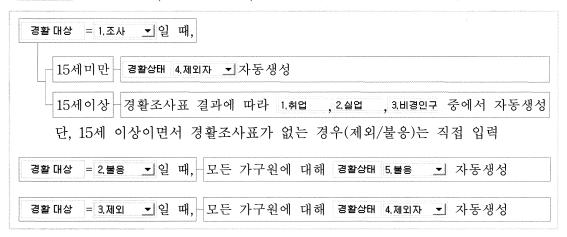
1.졸업	2.재학	3.중퇴	4.휴학
			i i
w			

- 졸업식이 조사대상주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졸업으로 처리
- 재수생은 하위 학교구분의 졸업으로 처리
- 대학원 과정을 마쳤으나 석사(박사)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한 경우는 대학원 중퇴로 기입
 - 학기를 마치고 논문작성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고 있으면 대학원 중퇴, 논문 작성을 위한 등록을 하고 현재 논문작성 중이면 대학원 재학으로 기입

경활상태	繳전입/전출날짜	30메모
1.취업 2.실업	전입 1 2 3 4 5 6 전출 1 2 3 4 5 6	
3.비경활 4.제외	사유 1 2	□경활인터넷
5.불응(외국인)		□외국인

② 경활상태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해당된 내용에 표시를 하고, 코드를 기입
- 「4.제외」에 해당되는 사람 : 영외거주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등
- 고용통계팀의 지침에 따라 내국인인 가구원은 일부 불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5.불응(외국인)」은 외국인인 경우만 선택 가능
- | 가구통합시스템 |
 - 경활상태 : 경활대상, 가구원나이, 경활조사표 결과에 따라 자동생성



② 전입/전출날짜 123456, 12

- 전입, 전출 및 연동교체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날짜와 사유를 입력 - 사유 : 20의 가구 전출입사유 참고
- 전입·전출, 누락을 3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전입·전출한 일자를 기입
- 경활전출날짜는 응답완료된 조사표가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입력
 - 경활전출날짜는 미리 입력 불가
 - 경활조사에 응답한 후 당월에 전출간 가구(원)는 경활입력 마감 후나 익월 경활 입력기간에 전출날짜를 입력

③ 메모

- 외국인인 경우만 「□외국인」에 표기
- 가구원별 연락처(필수사항 아님)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입

04 전산내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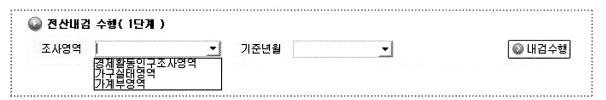
가. 개요

일정: 경활조사표 및 가계부의 입력을 마감하기 전까지 표본가구관리명부의 입력 및 전산내검을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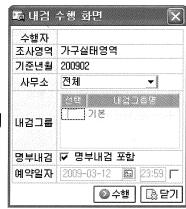
○ 내검규칙 : ● **출합내경** 의 **출** 내검규칙 에서 사용하는 내검규칙의 조건식과 내용 및 처리지침을 확인가능

○ 내검수행 : **중합내점** 의 **출** 내검규칙 에서 전산내검을 수행

나. 전산내검 수행



- ① 조사영역을 선택
 - 경제활동인구조사영역 또는 가구실태영역
- ② 기준연월 선택
- ③ 명부내검 포함 선택 ☞명부내검포함
 - 명부내검 외에 경활, 실태, 가계부를 함께 내검하려 면 내검그룹을 선택
 - 명부내검만 실시할 때는 내검그룹은 선택 해제
- ④ 내검수행 ^{◎ 수행}



다. 전산내검 결과



- 동일 기준연월에 대해 수행한 내검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결과 줄을 클릭하면 하단의 전산내검 상세리스트에 세부 내검결과가 나타남

라. 전산내검 상세 리스트

																			100000	1
	대상	전체						내검	유형	전체	데		ı	완료야	부 전체				Ľ	Second Second
VO.	사무소		조사구	구역	水化	가구	가구원니	H검유형			내검내용		완료▼	처리유형	사유	***********	반복	명부	五八五	
1	경인지방통계성	병1팀(/	11110711	02	03	0402	02	점검	가구원이	40.4	이상인데 대학	t교 재학중임	완료	면접확인	방통대생임		4	Q		
2	경인지방통계성	병1팀(/	11118811	03	32	0101	01	점검	가구원이	40 <i>A</i> [이상인데 대학	·교 재학중임	완료	면접확인	대학교3학년으로	편입하	4	Q		
3	경인지방통계성	318(F	11119920	02	31	0:01	01	88	가구원이	40,4	이상인데 어학	I교 재학중앙		•				Q,		
4	경인지방통계성	명2팀(<i>F</i>	11112710	01	02	0101	02	점검	가구원이	40 <i>M</i>	이상인데 대학	!교 재학중임	완료		!CH 3학년	대학종	4	Q		
5	경인지방통계성	성3팀(/	11122920	84	06	0501		점검	가구주와	배우7	다의 나이차이	가 20을 초과함	완료	전화확인	ļ:		4	Q		
6	경인지방통계성	94팀(/	11103220	02	26	0101	02	점검	가구원이	40 <i>M</i>	이상인데 대학	!교 재학중임	완료	년입작인 조사표참고) [대재학		¥	Q,		
7	경인지방통계:	94팀(#	11107120	04	16	0101	02	점검	가구원이	45 <i>M</i>	이상인데 대회	·원(석/박사) 쟤	완료	DE DE	냄		~	Q.		

○ 검색기능

- 대상 : 사무소별로 선택가능
- 내검유형 : 전체/오류/점검/금액기준 별로 선택가능
- 완료여부 : 전체/완료/미처리 별로 선택가능
- ※ 제목 줄을 클릭하여 내검내용, 사유, 반복 등 각 칼럼별로 정렬하여 볼 수 있음
- 수정이 필요한 오류/점검 처리방법
 - 결과줄을 더블클릭하거나 명부의 Q를 클릭하면 표본관리명부에서 오류/점검 이 발생한 항목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수정
 - 행정구역부호에 관련된 오류/점검 사항은 <u>◎ 조사구관리</u>의 <mark>☞ 행정구역변경조회</mark>에서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를 확인하여 수정
-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오류/점검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
 - 매월 계속되는 사유일 경우 반복□을 선택
 - 반복□을 선택하면 다음번 내검결과 리스트에 해당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전에 입력한 처리유형과 사유도 그대로 입력되어져 있음
- 처리유형
 - 처리유형: 전화확인 / 면접확인 / 조사표참고 / 기타
 -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당한 내용에 사유를 입력한 후 처리유형을 선택하면, 완료부분이 '미처리'에서 '완료'로 변경됨
 - ※ 완료부분이 미처리인 것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마. 표본관리과 전체내검
- 표본관리과에서 내검을 수행하여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 전체내검이 완료되면 표본관리과에서 표본가구관리명부를 백업(back-up)

아버지 / 임길택

말 한 마디 없이 불쑥 들어오시어 그냥 앉아만 계시는 아버지보다는 오늘처럼 술에 취해 흥겨하시는 아버지가

> 9 방 이불 속 잠든 동생 옆에 누워 나도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불러봅니다.

무언가 슬픈 생각이 들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날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월간 포본관리업무



01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 ◎ 조사구내 가구수가 과대/과소하거나 조사구역내 가구수가 적은 경우에 조정 필요
- 가.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ㅇ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과대초사구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25가구 이상인 조사구
과소조사구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15가구 이하인 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조사구역 내 가구수가 2가구 이하인 구역이 1개 이상인 조사구

- ㅇ 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조사구역 조정을 요청
 - 3개월 동안 지속되었어도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연기될 수 있음
 - 원룸 등이 신축되어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는 첫 달에 조정 가능
- 나.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 o 해당 조사구의 요도에 조정 예정 구역의 거처번호 우측에 가구수를 표시하여 스캔 후 파일(JPG) 첨부보고
- ㅇ 메모보고(스캔파일 첨부)로 세부내용을 보고한 후 요청공문 시행
 - 유선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도 메모보고가 우선되어야 함
- 다. 조사구 조정승인 결과통보 : 매월 10일까지
- 라. 조사 적용일 : 해당 승인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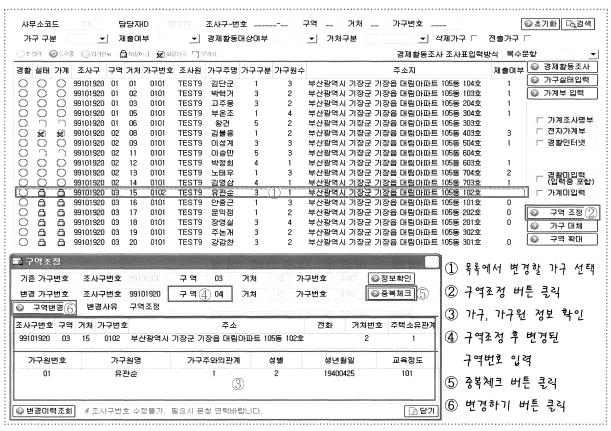
마. 조사구역 조정 요청양식 및 작성요령

| 작성예시 |

	지 반천/	초사구	기계	丕	정전	가구	÷	盃	정후	가구	个	
7 是	사무소	변호 변호	여부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사유
라소 조사구		25108220	경칼	3	5	5						전훈후 전입 없음
라대 조사구	대 전	34104420	경할+가계	5	4	//	6	5	4	7	6	03구역 빌라신축으로 증가
라소구역 조사구	TH 21	34104120	경칼			_						2007년 2월 이후 세입자 전입이 없음

- 구 분 : 과대조사구,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로 구분
- 조정 전 가구수 : 매월 내검 완료 후 확정된 가구수를 기입
- 조정 후 예상가구수 : 조정 예정구역(과소 및 과소구역)의 가구를 파악하여 기입
- 사 유 : 과소 또는 과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입
- 바. 가구통합시스템에서 구역번호 수정하기
- ㅇ 표본관리과에서 공문으로 승인받은 가구의 구역번호를 수정

가구통합시스템



- ※ 구역조정이 아닌 단순오타에 의한 거처 및 가구번호 정정은 ◎가구번호점점으로 가능
 - ❷가구번호정정은 총괄자가 로그인했을 때 ❷ 구역조정 위치에 나타남

사. 예시 (2009년 10월 요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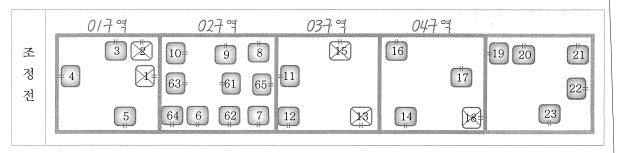
ㅇ 조사구역 조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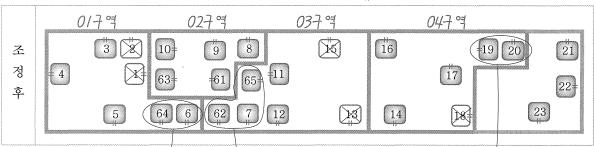
	지반철/	조사구	기계	交交	g전	가득	1 ?	조ス	성후	71-	î 수	
7 분	사무소	번호	여부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호	사유
라소구역	부산	2/1001120	경할+	2	10	2	,,,,,,,,,,,,,,,,,,,,,,,,,,,,,,,,,,,,,,	г	received to	- -	r	- <i>3</i> 구역 전ੈ 후 전입예정 없음
조 47	(육산)	20109420	71741	י	10	2)	,	כ	,	,	- 2구역 계속된 전입으로 가구수 라다

ㅇ 조사구역 조정 승인

	スルコ	スルコールル	조정전 가구수 조정후 가구수											
요청월 -	구분	사무소	번호.	여부	01 구역	02 구역	Market .		01 구역	Silventer &	600 cc 200		과소/과대 조치내역	적용월
2009.10.	4소구역 조사구	부산 (울산)	26109420	경활+ 가계	3	10	2	3	5	5	5	5	- 기존 02구역의 6, 64거처(2가구)竟 0/구역으로 재설정 - 기존 02구역의 7, 62, 65거처(3가구)竟 03구역으로 재설정(- 기존 비구역의 19, 20(2가구)거처竟 04구역으로 편입	2009.10.

- ㅇ 조사구역 조정 내역 반영
 - 조사구요도 수정





- 6, 64 거처의 가구△
 - ∘ 구역번호 : 「구역변경」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 7, 62, 65 거처의 가구<
 - 구역번호 : 「구역변경」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 가계동향조사여부 : 2009년 10월분 가계부 입력 기관에 「□가계」체크✔해제
- 19, 20 거처의 가구←─
 - 조사적용일부터 전입처리하여 조사 실시
- ※ 위의 내용은 예시일 뿐임.

02 가계동향조사 조사구역 조정

◎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의 회수율이 낮거나 적격가구가 부족한 경우 조정 필요

가, 가계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ㅇ 회수율이 50%이하이며, 추후에도 향상될 가능성이 없거나 저하될 수 있는 조사구
- ㅇ 적격가구가 6가구 미만인 조사구
- 집단 전출로 50%이상 가구수 감소가 예상되는 조사구(경매, 재건축 및 재개발 등)
- ㅇ 조사구역내에서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조사구

나. 가계 조사구역 조정종류

조사구역 변경

현행 조사구역 대신 다른 조사구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조사구역 확대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하여 다른 조사구역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ㅇ 조사구역 변경

- 적격(회수)가구가 과소한 조사구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중지하고, 동일 조사구 내의 가계동향조사 비(非)실시구역으로 기준구역을 변경하여 가계동향조사 실시
- 변경 전 조사구역에서 정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는 계속 조사
- 변경 후 조사구역에서 적격가구 전체에 대하여 조사
- 실제 구역번호는 수정하지 않고, 구역별 가계동향조사 실시여부만 변경

ㅇ 조사구역 확대

-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하여 동일 조사구 내에서 가계동향조사 비실시구역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 확대된 조사구역은 가계부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
 - 확대구역 내 미제출가구는 우선은 「□가계」에 체크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체크하여 가계부를 제출해야 함
- 확대된 조사구역 내의 1인 가구는 가계동향조사 제외

※ 유의사항

- 확대구역의 조사가구는 조사담당자의 편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가구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회수율을 계산할 때 확대구역의 미제출가구는 적격가구에서 제외하고 계산
- 따라서 확대구역의 조사가능 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누락시키면 안됨

- 다. 가계부 회수율 계산 방법
- ㅇ 가계부 회수율 기본 산식

- ☞ 불능가구 기준은 <N-02-⑪> 참고
- ㅇ 조사구역 변경
 - 새로 변경된 조사구역을 기준구역으로 하여 계산하되
 - 변경전 구역의 정상가계부는 적격가구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합산

- ☞ 기준구역 이외의 조사구역은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회수율 계산에 가산됨
- ㅇ 조사구역 확대
 - 기존 조사구역을 그대로 기준구역으로 하여 계산하되
 - 확대구역 내의 정상가계부는 적격가구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합산

1,2구역 (적격 5가구, 회수 2권) 에서
3,4구역 (적격 4가구, 회수 3권) 으로
조사구역 확대하는 경우 =
$$\frac{5}{8} \times 100 = 625\%$$

☞ 기준구역 이외의 조사구역은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회수율 계산에 가산됨

라. 향후 연동교체시 가계동향조사 중지 시기

- ㅇ 조사구역 변경
 - 조사구역 변경을 하더라도 구역번호는 수정하지 않음
 - 연동교체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2개의 조사구역 중, 빠른 번호의 조사구역은 연동교체 셋째달부터,
 - 느린 번호의 조사구역은 연동교체 넷째달부터 가계동향조사 중지
 - 기준구역이 아닌 기존구역에서 계속 제출하는 가구는 원래의 연동교체 시기에 중지

|예시1| 구역변경한 231015-11조사구(01,02구역→02,03구역)의 연동교체

	2310	15-11	g 9	연동	231015–20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교체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제출가구만 가계실시	가계실시	가계실시	_	첫째달 (5月)	_	_	_	_			
제출가구만 가계실시	가계실시	가계실시	_	둘째달 <i>(6</i> 月)	_	_	_	_			
가계중지	가계중지	가계실시	_	셋째달 (7月)	가계실시	_	_	_			
_	_	가계중지		넷째달 (8月)	가계실시	가계실시					

ㅇ 조사구역 확대

- 연동교체시 03구역은 01구역과 함께 셋째달부터, 04구역은 02구역과 함께 넷째달부터 가계동향조사 중지

| 예시2 | 구역확대한 231015-11조사구(01,02구역→01,02,04구역)의 연동교체

	2310 ⁻	15-11		연동		2310°	15-20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교체	01구역	02구역	03구역	04구역
가계실시		_	가계실시	첫째달 (5月)	_	_	_	_
가계실시	가계실시	_	가계실시	둘째달 (6月)			_	_
가계중지	가계실시	_	가계실시		가계실시	_	_	_
_	가계중지	_		넷째달 <i>(8</i> 月)	가계실시		_	_

마, 보고기일: 매월 20일까지

바. 조정승인 통보일 : 매월 25일까지

사. 조사개시일 : 익월 가계동향조사부터

아. 참고사항: 매월 20일 이후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익월에 검토

자. 가계 조사구역 조정 요청양식 및 작성요령 | 작성예시 |

지방청/	조전	초사구	변	경전	구역	뱬	경후	7	역	회수	적격	회=	产量	주택	특성		
사무소 (출장소)	종류	변호	01 구역	02 구역	03 04 구역 구역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적용월
부산	구역 변경	2/103710	0	0			0	0		4/9	8/11	44.4%	72.7%	아따트	아따트	<u> </u>	2009.02.
경기 (고양)	구역 박 대	31205320	0	0		0	0	0	0	4/4	7/7	100.0%	100.0%	단독 주택	단독 주택	적격6가구 미만	2009.07.

• 조정종류: 「구역변경」, 「구역확대」 중 해당 사항을 기입

• 조사구번호 : 조사구번호를 8자리로 기입

변경전(후)구역: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실시할) 구역에 ○표시

• 회수율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 변경 후의 예상회수율 산식은 『조정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

• 사유 : 적격가구 부족, 조사불응 및 회수율 저조 등의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차.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조정 내역 확인

○ 표본관리과에서 승인 공문이 시행된 후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조정내역 확인 가능 | 가구통합시스템 |



03 가계동향조사 가구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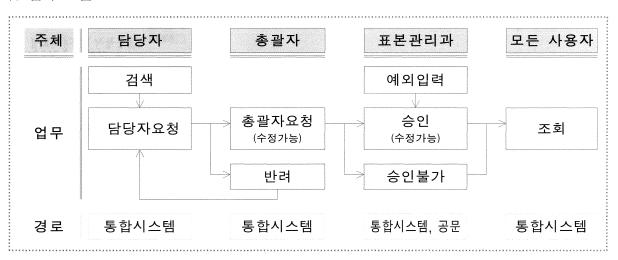
◉ 가계 적격가구가 3개월 이상 불응할 경우 동일조사구 내 유사한 경활가구로 대체

가. 가구대체 기준

기준 1	가구구분(사무직 / 생산직 / 자영자 / 무직) 이 동일
기준 2	가구원수(1인 / 2인 / 3인 / 4인이상) 이 동일

ㅇ 기준1과 기준2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로만 대체 가능

나. 업무흐름도



- ㅇ 담당자 : 가구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가구대체 요청
- 총괄자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이를 검토하여 매월 20일전까지 요청/반려

(※ 별도의 대체요청 공문시행 불필요)

○ 표본관리과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이를 검토하여 매월 25일까지 승인/승인불가

→ 공문으로 해당월의 승인내역을 통보하는 공문 시행

다. 조사개시월 : 승인시 명시한 조사개시월부터

라. 유의사항

- ㅇ 2007년 9월 이후 연동 및 부적합 교체조사구에 한하여 적용함
- ㅇ 가구구분과 가구원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대체 불가
- 조사대상 가구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대상가구를 교체하면 안되고 반드시 조사과장(팀장)과 협의하여 결정
- ㅇ 표본관리과에서 승인한 조사개시월을 반드시 준수

마. 대체가능가구 검색하기

	조사구	구역 거처	가구	가능	구역:	거처 가	구 가구주명	가구원	구분기	디위	전입날짜		주소		①신규 큰릭 (단당자권한)
대체전가구	99101920	02 (2) 08	0101	-	02	08 01	이 김불용	4	1	1	2007-10-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l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40	(ACH)
	(a) 가구검색	4 (3)		X	03	15 01	이 이순신	0	2	1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l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 ②대체전가구 입력
대체후가구	99101920		0101			15 01	02 유관순	0	3	5	2009-01-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J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③가구검색
	-			0(4)03	16 01	이 안중근	4	1	1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l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조사개시월	2009-03	9 6		X	03	17 01	이 문익점	3	1	1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J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	④대체가능가구 더블클릭
승민년월				X	03	18 01	이 장영실	5	3	4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J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⑤조사게시워 인격
대체사유	불용			X	03	19 01	01 주논개	4	3	4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l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⑤조사개시월 입력
ΗД		Æ)		X	03	20 01	01 강감찬	4	3	5	2007-11-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l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⑥비교 입력 (띵수아님)
0132				X	04	22 01	이 대조영	2	2	2	2007-1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J 동홍동 대림아:	파트 105동 🧳	
① 🖹 신규	□ 저장 (()	요청	1					STATE OF STATE					>	[⑦저장

바. 가구대체 요청 및 승인



- ㅇ 총괄자가 대체요청을 할 때, 특정월에 가구대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사. 가구대체 취소요청 및 취소승인
- ㅇ 대체후가구의 첫달부터 불응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취소 가능
- 담당자나 총괄자가 <a>■취소요청하면 표본관리과에서 <a>ᡚ승인취소 실시
- 아. 가계부 회수율 계산방법
- 조사구역을 변동시키지 않고 불응가구를 유사 가구로 대체하므로 대체된 가구에 대해서만 회수권수(분자)에 더해서 계산

1,2구역 (적격9, 제출7, 불능0) 의
불응가구 1가구에서
3구역내의 1가구로 가구대체 =
$$\frac{8}{9} \times 100 = 88.9\%$$

- 자. 가계여부 변경시기 : 조사개시 전월분 가계부 입력기간 종료이후에 변경
- 차, 향후 연동교체시 가계동향조사 중지시기
- 03구역은 01구역과 함께 셋째달부터, 04구역은 02구역과 함께 넷째달부터 가계동향 조사 중지 (<V-02>조사구역 확대의 지침 준용)

04 거처변동내역 보고

- 거처의 신축 및 철거로 인한 가구수의 변동을 파악하여 조사구역내 적정한 가구수를 유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함
- ◎ 01~04구역 내 거처나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을 때 조사구요도를 수정·보완하고 거처변동내역서를 작성하여 표본관리과로 보고
- ◉ 거처변동으로 인해 조사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거처변동내역 보고가 선행되어야 함

가. 거처변동 유형

	•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건축되어 새로 거처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 공지에 집을 짓는 경우
신축	• 거처의 완전 철거 후 새로 집을 지으면서 거처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두 거처를 완전히 허물어 한 거처를 짓거나 한 거처를 허물어 두 거처를
	짓는 경우 두 거처 모두를 신축으로 처리
	• 1개 거처가 완전 철거되어 새로 1개 거처가 건축되는 경우
개축	• 기존 거처에 2층을 올리는 등 공간변화에 의해 가구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 독립된 출입구가 생기는 경우
철거	· 기존 거처가 완전 철거되는 경우
台 刀	• 전면적인 보수나 증축을 위해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거처통합	• 철거되지 않은 두 거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나. 표본거처의 변동처리

- 신축·개축 : 조사구요도에 거처모양을 그리고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한 후 해당거처의 가구에서 조사실시
- ㅇ 철거 : 조사구요도에 철거표시를 하여 보고하면서 해당거처에서 조사중지
- ㅇ 과대/과소 조사구가 되었을 경우는 구역조정을 신청
- 다. 보고기일: 매월 5일까지
- ㅇ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별도 보고 생략

라, 보고방법 : 공문

ㅇ 『거처변동내역현황』과 『거처변동내역서』를 첨부

- 마. 조사구요도 보완
- ㅇ 거처가 신축 또는 누락된 경우
 - 해당거처를 요도에 그려서 새로운 거처번호를 부여한 다음 「신축」이라고 표시
 - 거처번호는 조사구 내의 끝번호에 연결되도록 부여
 -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
 - 건축기간이 6개월이상 걸리는 대형건물은 반드시 신축 중에 보완
- ㅇ 거처가 철거 또는 착오 기입된 경우
 - 해당거처를 붉은색으로「×」표시
 - 이 때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재조정하거나 수정 불가
- ㅇ 공동주택의 신축시에는 정면투시로 거처를 표시하며 공간이 작을 때는 조사구경계 밖이나 뒷면에 전개도를 그려서 표시
- 바. 거처변동내역현황 작성
- ㅇ 신축, 개축, 철거인 경우에만 거처변동내역현황을 작성

작성예시

사무소별 현황

5	신	축	7	축	철	7-
사무소명	거쳐수	거주예정 가 구 수	거처수	거주예정 가 구 수	거처수	현재거주 가 구 수
대구사무소	1	1	_	_	_	_
포항사무소	_	_	-	_	1	1
삼척사무소	_	_	_	_	2	_
영월사무소	1.				1	

│작성예시│ 조사구별 현황

	스	[축	7	[축	철	거
조사구번호	거 처 번 호	거주예정 가구수	거 처 번 호	거주예정 가구수	거 처 번 호	현재거주 가 구 수
321047-10	-	_	_	_	54	_
<i>321058</i> –10	. –	_	_	_	14	_
<i>321049</i> –21	-	-	_	_	07	1
322031-20	61	/	_	_	_	_

사. 거처변동내역서 작성

작성예시

조사구 번호	25/0//-	-70	당자 성명	\$ 71 5	[1]	소재지	대전 시	1구 둔산2동
[2] 변 동 거 처		7 [©] 6 [*] ドション 200	9.10.10.			61	신축 2009.	1002.
저 의 위 치		² 474 2009.1003.		첫 개 2	기내축 2009.10.06. 00902.09.	> 201 20	02 303 304 02 203 204 02 103	4
[3]	변동유형	① 거처	② 거	처의 종류	③ 거 처	4 7	} 구수	⑤ 비고
10,	20110	번호	현 재	예 상	변동시점	현 재	예 상	0 12
- 11	신축	61		단독	2009.10.		1	
변 동 유 형	철거	05	단독	공지	2009.10.	1		
π a	개축	04	단독	단독(다가구)	2009.10.		11	
6	통합	07	단독	단독	2009.10.	1	1	
【4】 특 기 사 항	· 5번 거 · 4번 거	중 6/번 거차 처 철거 후 처에 다가귀 등 주인집인	주차장으: 구택 //	로 사용 가구 완공됨.	//월 말 2가구	입주 예정	(개축)	

[1] 소재지

o 행정구역상의 동·읍·면까지만 기입

【2】변동거처의 위치

- ㅇ 조사담당자의 보관용 요도에 거처변동상태를 표시 후 부분 복사하여 첨부
- ㅇ 변동이 심할 경우 2부를 부분 복사하여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3】변동유형

o 신축·개축의 경우

	 신축된 거처번호를 기입 1개 거처가 헐리고 2개 이상의 거처가 건축된 경우 1개 거처는 기존번호를, 나머지는 해당조사구의 끝번호 다음 거처번호 부여
① 거처번호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 사택이 없는 경우 빌딩, 상가, 공장 등에 주거시설이 없어 상주할 수 없는 경우
	※ 개축의 경우는 거처번호 변동없음
② 거처의 종류	현재의 거처종류와 신축/개축 후의 거처의 종류를 기입신축의 경우는 현재란을 공란으로 둠
③ 거처변동시점	• 신축/개축이 완료(입주 가능한 상태)된 날짜를 기입
④ 가구수	현재란 :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예상란 : 신축/개축 이후 늘어나게 되는 가구수
⑤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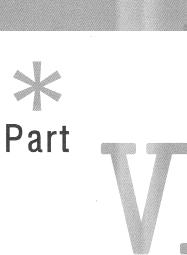
ㅇ 철거의 경우

① 거처번호	• 철거된 거처번호를 기입
② 거처의 종류	 현재란: 철거되기 전 거처의 종류를 기입 예상란: 재건축되는 거처의 종류를 기입 재건축예정 없으면「공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미정」으로 기입
③ 거처변동시점	· 철거가 완료된 날짜 또는 예정된 날짜를 기입
④ 가구수	현재란 : 철거 예정시점 바로 전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예상란 : 공란
⑤ 비고	· 철거 후 개축이나 신축 중일 경우 「개축중」,「신축중」이라고 기입

ㅇ 거처통합의 경우

① 거처번호	 하나의 거처번호를 사용하고, 나머지 거처번호는 삭제 주인이 산다면 주인의 거처 거처번호를 기입 주인이 살지 않으면 번호가 빠르거나 면적이 넓은 거처의 번호 사용 삭제된 거처번호는 재사용 불가
② 거처의 종류	• 현재의 거처종류와 거처통합 후의 거처의 종류를 기입
③ 거처변동시점	· 통합된 날짜를 기입
④ 가구수	현재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예상란: 거처통합 후 입주예정 가구수
⑤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

【4】특기사항: 기타 조사구의 특성 및 변동이유와 장래 변동 전망 등을 기입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개념 및 용어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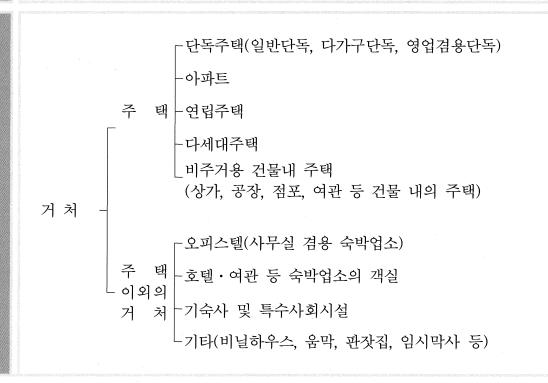


01 거처 (N-2-⑨ 거처구분 작성 관련)

거 처

- 거처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함
 -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일반독립주택
 -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거주 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
 - 영구건물은 아니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등
 - 특수사회시설 건물

거처의 종 류



조민

가구 (IV-2-④ 가구번호 작성 관련)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 혈연관계와 무관하므로 「가족」,「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 다를 수 있음
- ㅇ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혈연가구)
- ㅇ 가족과 가족이외(5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ㅇ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 (단독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비혈연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 6~19인 가구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집단시설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소지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가 구주가 외국인인 가구 (외국인가구)
 - ※ 단, 가구주가 한국인인 경우는 외국인가구가 아니며 함께 사는 외국인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 포함
 - ※ 국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화한 외국인은 한국인임
-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가구예) 하숙 또는 5인이하 동거인이 있는 가구
- 혈연 가구원이라도 취사·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
 예) 형제와 한집(주택)에 살지만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나 자취가구 등
- 집단가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관리인 가구가 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관리인가구만 일반가구이므로 조사
- 집단시설가구는 이미 조사구 설정시「기숙시설조사구」,「특수사회 시설 조사구」로 설정되어 있음
- ㅇ 집단시설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 특수사회시설의 관리인가구 및 시설내에서 혈연을 이루고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별도 분리하여 일반가구만 조사
 - 예) 고아원의 원장가구, 모자원의 어머니와 그 자녀가구 등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함 ☞ 1가구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생계를 달리 하는 함 □ 별개의 가구 (총 2가구)
- 주인가구와 5인이하의 하숙생·가사사용인·종업원이 함께 생활 ☞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
- 주인가구와 6~19인의 하숙생·가사사용인·종업원이 함께 생활 ☞ 주인가구로부터 독립시킨 별개의 가구
- 주인가구와 20인이상의 하숙생·가사사용인·종업원이 함께 생활 ☞ 하숙생은 별개의 집단시설가구로 구분하여 제외하고,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 ㅇ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1인가구와 자취생의 경우
 - ☞ 자취 단위별로 조사
 - ※ 자취하는 가구는 취사, 취침을 달리 하므로 별개의 가구로 취급
- 기숙사와 사회시설내에 관리인 또는 가구가 독립 취사하면서 거주 □ 관리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들은 일괄 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 ㅇ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동거)하여 한 집에 함께 생활
 - □ 한국인을 가구주로하고 외국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1개의 일반가구로 조사
- 보육원,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과 대사찰, 수녀원에 함께 생활
 - ☞ 1개의 집단시설가구로 구분하여 조사에서 제외
- ㅇ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
 - ☞ 1개의 집단가구로 구분하여 조사에서 제외
 - ※ 단, 명칭이 기숙사라도 취사, 취침을 달리 하면 별개의 가구로 조사

가구구분

가계동향조사 부적격가구 (IV-2-11) 가계동향조사여부 작성 관련)



- 조사기준시점 현재 경지 10a(약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ㅇ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 조사기준시점 현재 산림 3ha(약10,000평)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ㅇ 연간 벌목업, 양묘업에 종사한 가구
- 연간 재배·채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포함



-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단, 생계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남의 어업에 종사한 가구는 어가는 포함되지 않음



- ㅇ 국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끼리만 거주하는 가구
-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적격가구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 업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 ㅇ 가구원 중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 ㅇ 비혈연 가구로 구성된 가구

※ 적격가구와 부적격가구 구분사례



- 미혼형제, 자매, 사촌, 삼촌과 조카 등 친인척끼리 자취를 하는 가구
- 귀화한 외국인이 사는 가구
- 부모, 조부모 등 3대 또는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 가구
- 가구주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 가구
- 토지 등을 임대하고 본인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 혈연가구(친척 등)일지라도 하숙비를 받고 침식을 제공하는 가구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업이외의 다른 수익이 농업소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농가 요건의 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토지 등을 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가구는 적격가구, 제공받는 가구는 부적격가구
- ※ 기타 적격/부적격 가구 구분은 『가계동향조사지침서, 사회복지통계과』참고

계열별 해당 학과 (N-2-② 학력 작성 관련)

- ㅇ 인문계열
- o 예술·체육계열 [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 ㅇ 상농공수산계열 등
- 전문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 가사실업, 종합고등학교 등
- 가사실업계 [의상, 관광, 유아교육, 조리, 항공관광, 간호과 등]
- 사범계 [구제 사범학교
- 이 인문 · 사회계열
- 어문학 [국문학과, 노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충문학과, 한문학과 등]
- 인문학 [국사학과, 사학과, 신학과, 중국학과, 철학과 등]
- 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제학과, 법학과(공법학과, 사법학과 포함), 관광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관계학과, 농업경제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 행정학과 등]
- 이 예술ㆍ체육계열
- 예술학 [공예학과, 관현학과, 교회음악과, 국악과, 동양화과, 미술학과, 산업 디자인과, 서양화과, 성악과, 음악과, 작곡과, 조소과, 피아노과, 회화과 등]
- 체육학 [무용학과,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등]
- ㅇ 사범계열
- [가정교육과,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미술교육과, 상업 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지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한문교육과 등]
- ㅇ 자연계열
- 이학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수학과, 유전공학과, 통계학과(전산통계학, 계산통계학과 포함), 전산학과, 화학과 등]
- 농림학 [농생물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산림자원학과, 수의학과, 식품 공학과, 원예학과,조경학과,축산학과 등]
- 수산해양학 [해양학과, 수산학과 등]
- 가정학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의상학과 등]
- ㅇ 공학계열
-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산업공학과, 섬 유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 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 ㅇ 의약계열
- 의학 [간호학과, 의예(학)과 치의예(학)과, 한의예(학)과, 건강관리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학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등]
- 약학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 등]

조사구의 종류 (IV-5 조사구요도 작성 관련)

-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 A)
 -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보통조사구(특성부호 : 1)
 -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살고 있는 일반 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 섬조사구(특성부호 : 2)
 -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
-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3)
 - 기숙시설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 공장, 학교, 병원, 수녀원, 대사찰 및 기타 단체 등이 소속 학생, 직원 등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 특수사회시설 조사구(특성부호 : 4)
 -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 시설 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 5)
 - 관광호텔 조사구는 3등급(무궁화 2개) 이상에 대하여 호텔 단위 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하며,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외국 인이 집단적으로 20인 이상이나 또는 10가구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 설정한 조사구
- 외무부 관할조사구(해외공관)
- ㅇ 내무부 관할조사구(전투경찰대 등)
- 0 법무부 관할조사구(교도소, 소년원 등)
- 국방부 관할조사구(육·해·공군)

잃어버린 우산 / 용혜원

 넷속을 거닐
 때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는데

 비가
 개인
 후에
 일에
 쫓기다
 보니

 깜빡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할때는 결코 이별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접어 두고 서로의 길을 가다보니
사랑을 잊고 살다 보니
헤어저 버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비올 때 다시 찾는 우산처럼
그리움이 쏟아질 때면
그대는 언제나
홀로 펼치고 선 우산 속의
내 마음에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비는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art VII



01 사무소의 월별 표본규모

		경제	활동인구	조사			フ ト2	세동향조사							
사기	2009년 1→4월	2009년 5 → 8월	2009년 9→12월	2010년 1 ~ 4월	2010년 5→8월	2009년 1→4월	2009년 5→8월	2009년 9→12월	2010년 1→4월	2010년 5 ~8 월					
연동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그룹	8그룹	4그룹	5ユ룸	6그룹	7그룹	8그룹					
전국 총계	-	<u> </u>	1,629			999									
경인청 소계			504			288									
AA 경 인	207	207	207	207	207	126	126	126	126						
AB 인 천	99	99	99	99	99	54	54	54	54	54					
AC 수 원	49	48	47	48	47	28	27	27	27	26					
AD 성 남	22	23	22	22	22	11	12	12	12	12					
AE 의정부	18	18	18	18	18	11	11	11	11	11					
AF 부 천	29	30	30	30	30	16	16	16	16	16					
AG 평 택	13	12	13	12	12	7	7	7	7	7					
새고 양	19	20	20	20	21	9	9	9	9	10					
AI 7 EI	20	19	19	19	19	10	10	10	10	10					
AJ 이 천	11	10	10	10	10	7	7	7	7	7					
AK 화 성	17	18	19	19	19	9	9	9	9						
동북청 소계			288												
BA 등 등	97	97	98	99	99	57 57		57	57	57					
88 포 항	28	28	28	29	29	18	18	18	19	19					
BC 안 동	19	18	17	15	15	9	9	10	9	8					
BD 구 미	18	20	19	20	21	12	12	11	11	12					
BE 상 주	11	11	11	10	9.	9	9	9	9	7					
BF 경 산	17	16	17	17	18	9	9	9	9	11					
BG 청 송	8	8	8	8	7	3	3	3	3	3					
BH 춘 천	26	26	25	25	25	12	13	13	12	12					
BI 원 주	18	18	18	18	18	15	15	15	15	15					
BJ 강 릉	16	15	15	16	15	15	14	14	15	14					
BK 속 초	11	11	11	11	11	7	7	7	7	7					
BL 삼 척	12	13	14	13	13	10	10	10	10	10					
BM 영월	7	7	7	7	8	4	4	4	4	5					

		활동인구			가계동향조사 2000년 2000년 2000년 2010년 2010년										
2009년 1 ~ 4월	2009년 5 ~8 월	2009년 9→12월	2010년 1 ~4 월	2010년 5 ~8 월	2009년 1→4월	2009년 5→8월	2009년 9→12월	2010년 1 ~ 4월	2010년 5 ~8 월						
4그룹	5コ電	6그룹	7그룹	8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7二量	8二量						
		297		189											
99	99	99	99	97	61	61	61	61	60						
16	16	16	16	16	11	11	11	11	11						
16	16	16	17	17	9	9	9	10	11						
20	20	20	20	20	18	18	18	17	17						
8	8	8	7	8	3	3	3	3	3						
6	6	6	6	7	3	3	3	3	3						
6	6	6	6	6	3	3	3	3	3						
30	30	30	29	28	23	23	23	22	21						
21	20	21	21	23	16	16	16	17	19						
14	15	14	14	14	8	. 8	8	8	8						
10	10	10	11	11	4	4	4	4	4						
6	6	6	6	5	3	3	3	3	2						
45	45	45	45	45	27	27	27	27	27						
		279					171								
108	108	108	108	108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36	36	36	36	36						
33	34	35	34	34	25	26	26	25	25						
19	19	18	19	19	8	8	8	9	9						
12	10	10	12	12	12	10	10	11	11						
22	23	23	21	21	13	13	13	12	12						
6	6	6	6	6	4	4	4	4	4						
7	7	7	7	7	1	2	2	2	2						
		261					171								
99	99	101	102	101	66	66	66	66	66						
38	37	39	39	39	28	27	29	29	29						
9	10	8	8	9	7	8	7	7	8						
16	16	15	14	14	12	12	11	11	10						
9	9	8	8	8	4	4	4	4	4						
42	43	44	44	44	26	26	27	27	27						
25	25	24	24	24	16	16	15	15	15						
12	12	12	12	12	7	7	7	7	7						
11	10	10	10	10	5	5	5	5	5						

02 가계동향조사 가구구분표

● 가계동향조사 가구구분은 사무직·생산직·자영자·무직으로 나누어지며, 가구주의 직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결정됨

<u>.</u>	종 류	내 용 설 명
	공무원	관공서 또는 국·공립병원 및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 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사무직	공무원외 사무종사자	개인회사, 상점, 공장, 병원, 사립학교 등에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한전, 협동조합 및 각 공사에 근무하는 자도 포함 함. 단, 법인경영 자에 분류된 자는 제외
생산직	상용 및 임시근로자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포함)에 1개월이상 고용되어 주로 육 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01.1	일용근로자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 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자영업자	독립적으로 소규모의 상품제조, 가공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주
자영자 및	개인경영자	독립적인 대규모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사용인 5인이상) 개인조 직인 상점, 사업체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
경영자	법인경영자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사용인이 5인 이상 고용된 법인체 (합명, 유한, 주식회사 및 비영리단체)의 임원 및 정부기관의 고위관리
	자유업자	자기가 가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독립자영자 ※회사, 단체에 고용된 자는 근로자 가구에 분류
	무직	가구주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연금, 타가구로 부터의 송금보조, 이 자소득 등에 의하여 가계를 운영하는 가구

 $\dashv \square$

산업분류표 (제9차 개정 - 2008.02.01.시행)

	산업 대분류별	중분	!류명											
Α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03 어업	02	임업											
В	광업 (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금속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С	제조업 (10~33)													
	10 식료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가구 제조업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36)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Ε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F	건설업 (41~42)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Н	운수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 대분류별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58 출판업 60 방송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 63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0— — I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Р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96)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Т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	:비 /	생산활동(97∼98)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04 직업분류표 (제6차 개정 - 2007.10.01.시행)

대/중문류	2012年中央 1913年中央 1914年中 1914年中 1914年中 1913年中
1 관리자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규칙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의 장으로서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 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 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등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등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 숙박·여행·스포츠 및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등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 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 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전문가212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213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조경 기술자, 측량 전문가 등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등 237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캐드원 등

대 /중 분 류	た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한의사, 수의사 등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시민 단체 활동가 등 248 종교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학습지 및 방문 교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 장학관·연구관, 대학 교육조교, 보조 교사 등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 변리사 등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등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감정평가 전문가 등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등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배우, 리포터, 촬영기사, 영사기사 등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등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경기감독, 직업 운동선수, 경기기록원 등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3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며 문서처리가 주 직무이다.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11 행정 사무원 312 경영관련 사무원 : 총무 사무원 등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시무직	320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시무직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관련 사무원 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복지 보조, 이·미용, 혼례·장례, 운송, 여가·스포츠, 조리·음식에 관련하여 대인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 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대/중분류	소 분 류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2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 간병인 등 422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 보조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등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주방장 및 조리사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중분류는 잠재적인 고객이 갖는 구매의사의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과 판매를 구분하였다.
51 영업직	510 영업종사자
52 매장 판매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530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 텔레마케터, 판촉원 등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또한 물고기의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61 농·축산 숙련직	611 작물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0 임업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0 어업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 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 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기계의 발전 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 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 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등

대/중분류	소분류
73 목재·기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3 용접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61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경량 철골공 등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철근공, 콘크리트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등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77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등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78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799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작 업은 기계조작 뿐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된다.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12 음료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21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등 822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41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3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61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I

	图 경계활동인구조사(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873 자동차 운전원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88 상·히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8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89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단시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 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2 배달원 : 우편물 집배원 등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30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2 경비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953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주유원 등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992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999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A 군인	의무복무중인 사병, 단기부사관, 장교를 제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 군인을 말한다. 직업정보 취득의 제약 등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 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 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된다.
A1 군인	A11 장교 A12 장기 부사관 및 준위
Z 무직 및 기타 분류불능	직업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05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동구역별 조사횟수

그룹		1						3	•			1	- 1	•	5	•			6				7		90; A	8	(A. 36			9	7.900
구역	1 2	3 4		2	3	4	1 2	2 3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1	2	3	4	1	2	3 4
05.1월 2월	1 교정 2 1	고정 고 고정 고	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고정 고	정 고경 정 고경	명 고정 명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당 당 당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교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3월 4월	3 2	1 I 2 1	정 교정	고정!	고전 고전 고전	고정	고정 고	정 고정 정 고정	점 고정 점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정 고정 정 고정	고정	1 78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5월 6월	5 4 6 5 7 6	3 2	2 1	고정 1	고정	고정	200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정 교장	성 고정 당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교 교 교 교 교 교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교정	고정	고정	고정 고
7월 8월	7 6	5 4	1 3	2	1	고정 1	고정 고	정 고경	병 교정 명 교정	고전 고전 고전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구정 :	고정	**************************************	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고정	고정	교정	고정	고정	NO N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월 2월	8 7 9 8 10 9 11 10	7 6	5 5	4	2 3 4	2	전 의 의 의 교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병 고정 병 고정	고정	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보고		고정	고정	고정	고정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고정	구정 :	정정 전 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3 전하면 전한	전에 보고 내내		~~~~~~~~~~~~~~~~~~~~~~~~~~~~~~~~~~~~~~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11월 12월	11 10	8 7 9 8 10 9	3 7 9 8	6	4 5 6	2 3 4 5 6 7	3 2	1 2	期 1 2 2 2 3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교정	고정	교정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교정	고정	고정	의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06.1월	12 11 13 12 14 13	11 1	0 9	8	7	6	5 4	3	2	1	顶 1	고정	고정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	정 고청 저 고청	고정	고정	고정	78 78	고정	고정	고정	교정	78 78	고정 고
3월	15 14 16 15	13 1	2 11	10	9	8	7 6	5 4 6 5 7 6 7 8 9 8 0 9 11 10 2 1	4	2 3 4 5	1 2 3 4	고정 1	고정	교정 교정 1 2 3	고정	고정	고정고정	72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고정	고정 고	정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고정	고정	교정	고정	고정	고정고
3월 4월 5월 6월 7월	17 16	15 1	4 13	12	11	10	9 8	3 7	6	5	4	2	2	1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78 T	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교정	고정 I
7월	18 17	17 1	6 15	14	12 13	12	10 9	0 9	8	6 7 8	6	5	4	3	2	1	교정	고정	고정	고정 고	정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I
9월	20 19 21 20	19 1	8 17	16	14 15	14	13 1	2 1	4 5 6 7 8 9 1 10 2	9	5 6 7 8 9	7	6	5	4	3	2 3	1	고정 1	IN I	정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그
11월	22 21 23 22 24 23 25 24	20 1 21 2 22 2 23 2	9 18 0 19	18	16 17	16	14 1 15 1 16 1	3 12 4 13 5 14	3 12	10 11	10 11	4 5 6 7 8 9	8	4 5 6 7 8 9	2 3 4 5 6 7 8 9	2 3 4 5 6 7	3 4 5	2	2	1 1	정고정	IN IN	자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지 그 지 그 지 그 지 그 지 그	고정고정	전 전 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정 고정	고정	18 18	고정	고정	고정 그
12월	25 24	23 2	2 21	20	18 19	18	17 1	5 14 6 15	3 12 4 13 5 14 6 15	12 13 14	12 13	11	10	9	8	7	6	5	4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1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10	고정	TO TO	IN I
2월 3월	26 25 27 26	24 2 25 2	3 22 4 23	1: 22:	20 21	20	18 1 19 1	6 15 7 16 8 17	7: 16	15	14	12 13	12	10 11	10	8 9	7	6	5	5 4	3	2	1	고정	고정	고정	고정	TW.	고정	100	고정 그
4월 5월	26 25 27 26 28 27 29 28 30 29 31 30	25 2 26 2 27 2 28 2 29 2	5 24 6 25	24	21 22 23 24 25	20 21 22 23 24	20 1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27 2 28 2	9 18 0 19	3 17 9 18	16 17	15 16	14 15	13 14	12 13	11 12	10 11	9	8	7 8	6 5 7 6 8 7 9 8 10 9	5 4 5 5 6 7 8 7	4	2 3 4	1 2 3	고정 1	고정	고정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고정	I W	TW I
6월 7월	30 29	28 2 29 2	8 27	26	24 25	23	22 2 23 2	1 20) 19 1 20	19	17 18	16 17	15 16 17	14 15	13 14 15	12 13	11 12	10 11	9 10	9 8	7	6	5	3 4 5	2	2 3	1	고 교	TW I	고정	TO I
8월 9월	32 31 33 32 34 33 35 34 36 35	30 2 31 3	9 28 0 29	28	26 27	25 26 27	24 2 25 2	3 22 4 23	2 21 3 22	20 21	19 20	18 19	17 18 19	16 17	16	14 15	13 14	13	11 12	11 1	0 9	8	5 6 7 8 9 10	6	5	4	3	2	1	고정	고정 고
10월 11월	34 33	32 3 33 3 34 3	1 30 2 31 3 32	30	28 29 30	27 28 29	26 2 27 2	5 24 6 28	3 22 4 23 5 24 6 25	22 23 24	20 21 22 23	19 20 21 22	19 20 21	18 19 20	17 18	16 17	15 16 17	14 15 16	13 14 15	12 1 13 1 14 1	1 10 2 11	10	9	6 7 8 9	6 7	4 5 6 7	5	4	3	2	1 1
8월 9월월 10월 11월 12월 07 12월 3월월 5월월 6월월 9월월 10월월 11월월 12월 08 12월	20 19 21 20 22 21 23 22 24 23 25 24 26 25 27 26 28 27 29 28 30 29 31 30 32 31 33 32 34 33 35 34 36 35 1 36	34 3 35 3 36 3	4 33	31	30 31	29 30 31	28 2 29 2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28 0 29 11 30 2 3	3 25 7 26 3 27	24 25	23 24 25	23	22	21	18 19 20	18 19	18	17	16	15 1	4 13	12	11	10	8 9	8	7	6	4 5	4	2
2월	2 1	36 3 1 3	6 35	34	32 33 34	31 32	29 2 30 2 31 3 32 3 33 3	9 28 0 29	3 27 9 28	27	26	24 25 26 27	23 24 25 26 27 28 29	22 23 24 25 26 27	21 22 23 24 25 26 27	20 21	19 20	19		16 1 17 1	6 15	14	12 13	11 12	10 11	9 10	8 9	7 8	6 7 8 9	6	3 4 5 6 7 8 9
4월 5월	4 3 5 4	2 3 2	1 36	36	34 35	32 33 34	32 3 33 3	1 30	29 1 30	28 29	27 28	26 27	25 26	24 25	23 24	22 23	21 22	21	19 20	18 1 19 1	7 16 8 17	15 16	14 15	13 14 15	12 13	11 12	10 11	9 10 11	8 9	7 8	6
6월 7월	5 4 6 5 7 6	4 (2 1 3 2 4 3	1 2	36 1	35 36	34 3 35 3	3 32 4 33	2 31 3 32	30	29 30	28 29 30	27 28	26 27	25 26	24 25 26	23 24	22 23	21 22 23	20 1 21 2 22 2	9 18 0 19	17	16 17	15 16 17	14 15 16	13 14	13	12	11	10	8 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8	6 5	5 4	3 4	2 3 4	1 2 3	36 3 1 3	5 34 6 35	4:33	32	31	30 31	29 30	28	27 28	26 27	25 26	25	23 24	22 2 23 2	1 20 2 21	19	18 19	17 18	16 17	15 16 17	15	13 14	12 13	11 12	11 1
10월	10 9 11 10	8	7 6	5	4 5	3 4	2 7	36	3 35	34	32 33 34	31 32 33	30 31 32	29 30 31	29 30	27 28 29	27 28	27	25 26	23 2 24 2 25 2	3 22 4 23	21 22	19 20 21	18 19 20	19	17 18	16 17	15 16	14 15	13 14	12 1 13 1
12월 09.1월	12 11 13 12	10 9	3 7 9 8 0 9	6 7 8	5 6 7 8 9	4 5 6 7 8 9	19	2 1 3 2 4 3 5 4 5 5 6 5 7 6 7 8 9 8	36 1 2	35 36 1	34 35 36	33 34 35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31 32 33 34 35	28 29 30 31 32 33 34 35 36	29 30 31	28 29 30	28 29	27 28	23 2 24 2 25 2 26 2 27 2 28 2 29 2 30 2 31 3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 21 22 23 24	20	19 20	18 19	17 18	16 17	15 16	14 1 15 1
2월 3월 4월	14 13 15 14	12 1	11 10	9	8 9	7 8	6 5	5 4	2 3 4	2		36 1	35 36	34 35	33 34	32 33	31 32	30 31	29 30	28 2 29 2	7 26 8 27	25 26	24 25	23 24	22 23	21 22 23	20 21	19 20	18 19	17 18	16 1 17 1
4월 5월	15 14 16 15 17 16	14 1 15 1	2 11 3 12 4 13	11	10 11	9	8 7	6	5 6	4 5	3	2	1 2	36 1	35 36	34 35	33 34	32	31	30 2 31 3	9 28 0 29	27 28	26 27	25 26 27	24	23 24	22	21	20	19	18 1
6월 7월	18 17 19 18	16 1	5 14 6 15	13	12 13	11 12	10 9 11 1	8	7	6	5 6	4	3	36 1 2 3	1	36	35 36	34	33 34	32 3	1 30	29 30	28 29	27 28	25 26 27	24 25 26	23 24 25	22 23 24	21 22 23	20 21 22	20 1
8월 9월	20 19	18 1	7 16	15	14 15	13	12 1 13 1	1 10 2 1	4 5 6 7 8 9 1 10	6 7 8 9	1 2 3 4 5 6 7 8 9	6	5	4	3	2	1	36 1	35 36	33 3 34 3 35 3	3 32	31 32	30 31	29 30	27 28 29	26 27 28	25 26 27	25 26	23 24 25	22 23 24	21 2 22 2 23 2
10월	22 21 23 22	20 1	9 18	17	16 17	15	14 1	3 12	2 11	10	9 10	2 3 4 5 6 7 8 9	7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2 3	2 3		36 3 1 3	5 34	32 33 34 35 36 1 2 3	32	31 32	30 31	29	28	27	26 27	25 26	19 1 20 1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27 2 28 2 29 2
10월 11월 12월 10.1월 2월	24 23	20 1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1 20	19	18 19	17 18	16:1	5 14	3 12 4 13 5 14	11 12 13	11 12	10 11	9	8	7	6	4 5 6	4 5	1 2 3 4 5 6	2 1	36	35	32 33 34 35	33 34	32 33	29 30 31 32	28 29 30 31	28 29 30	26 27 28 29	27 28	26 2 27 2
10.1월 2월 3월	24 23 25 24 26 25 27 26 28 27	24 2	2 21 3 22	20 2 21	20	19	18 1	6 15 7 16 8 17	3 15	14	13 14	12 13	11 12	9 10 11	9	8	7 8	6 7	5	2 1 3 2 4 3 5 4 6 5	1 2 3	1	36	35 36	34 35	33 34	32 33	31	30 31	29 30	28 2 29 2 30 2
4월					21 22		19 1 20 1				15	14	13 14	12	11	10	9	8 9	7			129680450	1 2	1	36	35	34	33	32	31	30 2
5월 6월 7월	30 29	28 2	7 26	25	24	23	22 2	0 19	9 18 0 19	17 18 19	16 17 18	15 16 17	15 16 17	13 14 15	12 13 14	11 12 13 14	11	10 11	8 9 10	8 7	5 6	5	4	3	1 2 3	1	35 36	34 35	34	33	31 3
/월	29 28 30 29 31 30 32 31 33 32	27 2 28 2 29 2 30 2 31 3	6 25 7 26 8 27 9 28 0 29	24 25 26 26 27 28	26	25	24 2	3 22	2 21	20	19	18	17	16 17 18	15	14	12 13	12	11 12	7 6 8 7 9 8 10 9 11 11 12 1	6 7 9 8 0 9 1 10	7	6	5	4	3	2	36	36	35	33 3 34 3 35 3
10월	34 33 35 34	32 3	1 30	29	28	27	26 2	5 24	4 23	22	21	20	19	18	16 17	15 16	14 15	14	13	12 1	1 10 2 11	4 5 6 7 8 9	3 4 5 6 7 8 9 10 11 12 13	6 7 8 9	4 5 6 7 8 9 10	36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8	2 3 4 5 6 7 8	2	1	36 3
12월	36 35	34 3	1 30 2 31 3 32 4 33 3 34 6 35 1 36	29 30 2 31 3 32 1 33	30	29	28 2	7 20	5 25	24	23	22	21	20	19	18	16 17 18 19 20	15 16 17	14 15	13 1 14 1 15 1	3 12 4 13	11	10	9	8	7	6	5	4	3	2
11.1월	2 1	36 3	3 34	33	32	31	30 2	9 28	3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6 17	15 1- 16 1 17 1	5 14 6 15	12 13 14	12	10 11 12	10	9	8	7	6	5	4
3월 4월	29 28 30 29 31 30 32 31 33 32 34 33 35 34 36 35 1 36 2 1 3 2 4 3 5 4 6 5 7 6	2	6 35		34	33	32 3	1 30	28	28	27	26	25	24	23	22	21	20	18 19	18 1	7 16	15	14	13 14	10	11	10	9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31 3 32 3 33 3 34 3 35 3 36 3 4 5 6 7 8 9 10
5월 6월	6 5	3 4	2 1 3 2 4 3	36 1	35 36	34	33 3 34 3	3 32	1 30 2 31	30	28 29	28	26	25 26	24 25	23	22	22	21	20 1	9 18	16	14 15 16 17 18	15	13 14	12 13 14 15	12	10 11	10	9 16	8
7월 8월	7 6 8 7 9 8	5 4 6 5	4 3 5 4	3	1 2	36	35 3 36 3	4 30 5 34	32 4 33	31 32	30 31	30	28	27	26 27	25 26	25	23	23	21 2	19 1 20	18 19	17 18	15 16 17	15 16	15	14	13	11	11	9
9월 10월	9 8 10 9 11 10	7 6	5 6	4 5	3 4	2	1 3 2 1	6 38 36	19 1 20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3 27 9 28 9 28 9 29 1 30 2 31 3 32 4 33 5 34 6 35	33	32 33	31 32	30 31	29 30	28 29	27 28	26 27	25 26	24 25	23 2 24 2	21 21 22	20 21	19 20	18 19	17 18	16 17	15 16	14 15	13 14	12 13	11 1 12 1
8월월 9월월 10월월 11월월 12월월 3월월 5월월 7월월월 10월월 11월월월 12,12월월 4월 4월 5월 6월	11 10 12 11 13 12	32 3 33 34 3 35 3 36 3 1 1 3 2 2 3 4 5 6 8 8 9 8 9 10 11 1	2 1 3 2 4 3 5 4 3 7 6 7 6 7 8 9 8	1 2 3 4 5 6 7 8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5 6 7 8 9 1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5 6 7 8 9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2	11 26 22 22 23 22 24 23 25 26 26 26 27 26 28 27 29 28 20 28 20 28 20 28 21 3 31 3 32 3 33 3 34 4 3 36 6 6 28 37 3 38 3 38 4 3 38 5 38 5 38 6 6 6 8 38 6 7 7 26 38 7 8 8 7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36 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45 67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5 67 89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6 1 2 3 4 5 6 7 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30 3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8 1 19 1 20 1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27 2 30 2 31 3 31 3 32 3 33 3 34 3 35 3	4 23 5 24	22 23	19 20 21 22 23 24 25 26 2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9 20 21 22 23 24 2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6 17	15 16 17	14 15	13 1 14 1
12.1월 2월	12 11 13 12 14 13	11 1 12 1	1 10	8	7 8	6	5 4	3 5 4	1 2 3 4 5 6 7 8	1 2	36 1	35 36	34 33	33 34	32 33	31 32	30 31	29 30	28 29	27 20 28 2	6 25 7 26	24 25	23 24	22 23	21 22	20 21	19 20	18 19	17 18 19	16 17 18	15 1 16 1
3월 4월	14 13 15 14 16 15	12 1 13 1 14 1	2 11 3 12	10	9 10	8 9	7 6	5 6	4 5	3 4	2	1 2	36 1	35 36	34 35	33 34	32 33	31 32	30 31	29 2 30 2	8 27 9 28	26 27	25 26	24 25	23 24	22 23	21 22	20 21	19 20	18 19	17 1 18 1
5월 6월	17 16 18 17	15 1	4 13 5 14	12	11 12	10	9 8	7 8	6	5 6	4 5	3	2 3	1 2	36 1	35 36	35	33 34	32 33	31 3 32 3	29	28 29	27 28	26 27	25 26	24 25	23 24	22 23	21 22	20 21	19 1 20 1
7월 8월	19 18 20 19	17 1	6 15	14	13 14	12	11 1 12 1	0 9	8	6 7 8	6	5 6	4 5	3	2	36 1 2	36 1	35 36	34 35	33 3 34 3	2 31	30 31	29 30	27 28 29	26 27 28	26 27	20 21 22 23 24 25 26	24 25	23 24	19 20 21 22 23	21 2 22 2
9월	21 20	19 1	8 17	16	15 16	14	13 1 14 1	2 11	1 10		8 9	7	6	5	4	2 3 4	2	1 2	36 1	35 3 36 3	4 33	32 33	28 29 30 31 32	30	29 30	28 29	27 2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0 21 22 23 24 25 26	24 25	23 2 24 2
10월 11월 12월	22 21 23 22 24 23	20 1 21 2 22 2	9 18 0 19 1 20	18	17 18	16 17	15 1 16 1	3 12 4 13 5 14	3 12 4 13	11	10 11		8	6 7 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5 67	5	4 5	2 3 4	2	16 1 17 11 18 1 19 1 20 1 21 2 22 2 23 2 25 2 26 2 27 2 28 2 29 2 30 2 31 3 32 3 33 3 34 3 35 3 36 3 31 2 1	35 36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3 34	32 33	31	30 31	29 30	28 29	27 28	24 25 26 27	20 1 21 2 22 2 23 2 24 2 25 2 26 2
※ 으여			커 궁		H <i>째</i>		"2" c		7 忌	. (-;	- 1 1 3		J	<u> </u>		<u> </u>	J		<u> </u>	_ : '	, 00				- PER 19	- 15/1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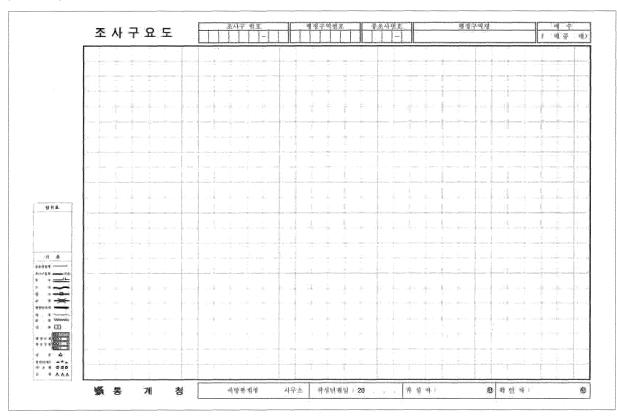
VII-06 연동표본모형도

06 연동표본모형도

	Panel1	Panel2
년 월	그룹 9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그룹 7 그룹 8	그룹 9-1 그룹 1-1 그룹 2-1 그룹 3-1 그룹 4-1 그룹 5-1 그룹 6-1 그룹 7-1 그룹 8-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007 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1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2008 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3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5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09 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
7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8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0	togo sentro de la composição per representa de como como de como de cidade de ignativado por como interpres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1	to the control of th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 26 27 28
2010 1	kan karangan kanangan kanangan kangan karangan karangan karangan kanangan kanangan kanangan kanangan kanangan 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the property of the control of the 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5	to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process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control of th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6	kara da kara da da da kara da da kara da kara da kara 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07 조사구요도 양식

앞면



| 뒷면 |

조 사 구 안 내				
	•			
답 당 자 현 황				
답 당 기 간 답 당 자	데	7		
-				
-				
-				
-				
-				
기 타 참 고 사 할				

-|[

08 통계법(발췌) - 2007년 7월 23일 공포 -

- 가.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
- 제26조 (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 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나.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
-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도는 통계작성기 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벌칙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제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 39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1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라. 과태료 부과 기준(통계법시행령 제53조제3항 관련)

(단위:만원)

위반사향	해 당 법 규정	위반: 1회	횟수별 고 2회	가태료 3회이상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50	80	100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2호	50 (5)	80 (10)	100 (2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	50 (5)	80 (10)	100 (20)
법 제30조제3항 또는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 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4호	50	80	100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41조 제3항 제5호	50	80	100

* 괄호 안은 자료수집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임

09 인사장 및 감사장

인사장 - 경제활동인구조사용

인사장 - 가계동향조사용

감사장

인사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동세점였습니다. 일말이 살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라여졌으니. 보투이 사회 동세점 직원을 통해서 사신으로 원칙드라게 된 집을 명해서 주사가 바랍니다.

오늘 소화 역할이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웹 가장이 통계용에서 출시하는 결제한도인구조되 의 대로 가구로 재료이 선정되었게 때문입니다. 소화 통계설에서는 공반에 과하적인 통계조시 가방에 의해 귀 가장을 교본 대통 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생성은 연구주해당세, 스타자물기통생, 설업통생, 등 다리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그녀들의 동생을 수십 만든 뿐이나라 통생적성기를 및 소설을 하는 국가격관입니다. 특히 "경생활동인구소에는 그용생활 수립에 필요한 우리 나라의 졸업자 및 설업자를 메달 과학되어 생봉하는 중요한 통생입니다.

통계조사는 국가공부원인 통계정 조사당당 직원이 권 가정을 작실 방문하다. 조사하게 되며, 이러분이 탈면해 주인 내용은 통계법 제품조에 비해 그 바람이 참석하고요됩니다.

의 동계는 전문회사 학교반 2천 가운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리자 게 가항은 1861가무를 내고하게 되고, 게 가장하지 가역되는 무임과 (병은 480명의 유업자로 개산됩니다.

무역로 참 가장에 신경과 행분이 항상 함께 교기를 선선으로 직원합니다.

20 년 월 일

통계 청류를

인사트립니다

애팅하십니까?

· 동생성왕입니다. 필압이 참여: 쉽고 인사를 보고도, 참여 보고이했으나 '본류이 전화 동생성 직원을 통해서 작년으로 단시뜨리에 된 집을 양해해 주시작이랍니다.

2.65 전히 작원이 여명적 돌아왔게 온 어부는 귀 각정이 통계성에서 실시하는 구작들할수요 의 대설가구로 때문이 는정되었지 때문입니다. 지하 통계성에 나는 불만이 가하적인 통계조사 지방에 의해 귀 가정을 되본 대성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통계성은 현근주변통계, 스마자들 작용계, 설업통계 등 나타살리를 구려는데 필요한 최종이 통계를 직접 받는 뿐이나라 통계되었다는 및 소중을 하는 국가 기관리나다. 등하 "자계통향소자"는 해분 역명로 가게들을 및 자존 용계를 즉성 하석 국민생의 문학자리로 제공되는 중요한 통해됩니다.

동계조시는 국가공부원인 통계성 소역된당시원이 위 기성을 기십 방문교육 소식하여 되며 이러분이 임반해 주실 대칭은 통계법 해결조에 의해 그 비밀어 산업이 보호됩니다.

이 통하는 친구에서 약 8월5백 기구가 참이하게 뛰니다. 바리지 귀 기정은 L8/2이구를 내용하게 되고 귀 기술에서 바닷티는 가게들이 및 지출은 바로 L8/2이구를 가게들었다. 사촌도 개설되게 입니다.

- 글으로 집 작성에 근장과 행존이 항상 함께 하스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20 년 월 일

통계 청류를

감 사 징

그 동안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소중한 통계로 만들 어져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 및 경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조사에 참여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며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통 계 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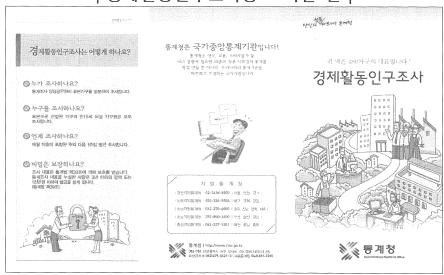
Н

П 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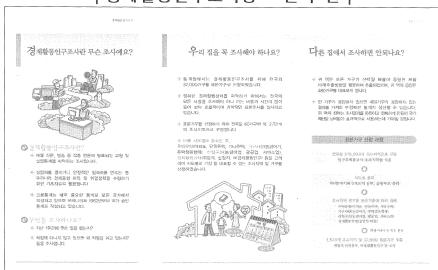
>111

10 홍보용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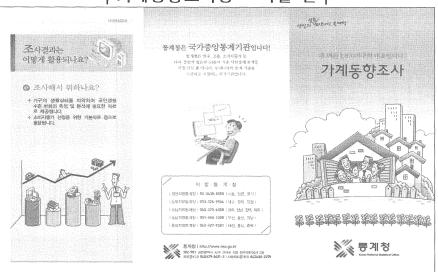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용 - 바깥 면



경제활동인구조사용 - 안쪽 면



가계동향조사용 - 바깥 면



가계동향조사용 - 안쪽 면

